

2025 년 하반기  
법률진단보고서  
(주식회사 엔알비)

2026. 5. .



## 목 차

I. 회사 일반 및 주식 .....	3
1. 회사의 연혁 등.....	3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3. 정관 등 회사의 주요 내부 규정.....	13
4.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이사록 (2025년 하반기).....	16
5. 최근 3년간 자본금 변동 등.....	21
6. 최근 3년간 자기주식 취득 등.....	22
7. 주권 관련 사항.....	22
8.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등.....	22
9. 현재 주주에 관한 사항.....	22
10.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 등.....	24
11. 의결권 신탁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25
12. 주주간계약서 등.....	25
1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등.....	25
14. 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 등.....	26
15. 회사의 사채발행 등.....	27
16. 회사의 임원 현황 등.....	28
17. 회사의 임원의 보수규정 등.....	30
18. 회사의 타법인 출자 내역.....	31
19. 회사의 자회사 및 영업소 현황 등.....	31
20. 최근 3년간 이해상충 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31
21. 회사의 임직원에게 대한 대여금 내역.....	33
22. 최근 3년간 회사의 주주간 분쟁 등.....	33
23. 최근 3년간 회사의 중대한 영향력 있는 회사 운영 관련거래.....	33
24. 임직원 주식 소유 현황.....	35
II. 인·허가 .....	37
1. 사업자등록.....	37
2. 인·허가 및 신고증.....	38
3.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내역 등.....	41

4. 해외자회사 설립 등 직접투자신고 내역 등.....	41
5. 과거 3년간 해외매출채권 미회수 신고 내역.....	42
6. 협회 가입 내역 등.....	42
III. 유형자산 .....	44
1. 부동산.....	44
2. 토지, 건물 외 유형자산.....	47
3. 유형자산 증감내역.....	48
IV. 부채 기타 채무 .....	50
1. 차입금 및 담보 현황.....	50
2.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현황.....	50
V. 지식재산권 .....	52
1. 지식재산권 현황 (보고서 작성일 기준).....	52
2. 영업비밀.....	53
3.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54
VI. 계약 .....	55
1. 주요 매출 계약 현황.....	55
2. 기타 계약 현황.....	55
VII. 인사·노무 .....	57
1. 개요.....	57
2. 근로조건 관련 규정.....	60
3. 산업재해 및 사회보험.....	66
4. 산업안전보건관리.....	66
5. 최근 직원 퇴사 현황.....	68
6.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68
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69
VIII. 소송 및 분쟁 .....	77
1. 제재 현황.....	77
2. 소송 현황.....	77
3. 기타.....	77
IX. 보험 .....	78

1. 보험가입 현황.....	78
2. 보험사고.....	78
X. 공정거래 .....	79
1.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 현황.....	79
2. 공정거래 관련 제재 또는 분쟁 내역.....	80
XI. 환경 및 안전 .....	81
1. 환경.....	81
2. 안전.....	81
3. 환경·안전 관련 사고 발생 여부.....	83
XII. 조세 .....	84
1.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내역.....	84
2. 세액공제 내역.....	84
3. 세무조사 및 세무 관련 분쟁.....	85
XIII. 종합의견 .....	87

## 주식회사 엔알비에 대한 법률진단보고서

본 진단보고서는 주식회사 엔알비(이하 “엔알비” 또는 “회사”)가 2025년 7월 코스닥 상장 이후, 상장유지 요건 충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운영 중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요 검토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2025년 하반기)의 경영상태, 자산상태, 재무적·영업적 활동 등 기업 전반에 관하여 중요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적시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장회사로서의 법적 리스크 사전 예방 및 내부통제 체계 점검 차원에서 작성된 종합 진단 자료이며, 특정 쟁점이나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법률 감정서나 보증서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진단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외부로 공개된 데이터를 근거로 수행되었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현장 조사나 독자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 제공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실관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법적 검토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 회계, 외국법 등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검토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사의 목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공된 모든 문서를 전수 요약하기보다는 상장회사의 상장유지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진단과 관련하여, 당 법무법인은 다음 사항을 전제하였습니다.

- (1) 당 법무법인에 제공된 문서의 인영 및 서명은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사본은 원본과 동일하다.
- (2) 당 법무법인에 제공된 문서 및 정보는 모두 정확하고, 진실하며, 제공된 문서에 전제, 언급되거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법적인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제공일자로부터 본 진단보고서 작성일까지 변동되지 아니하였다.

# I. 회사 일반 및 주식

## 1. 회사의 연혁 등

주식회사 엔알비 (NRB, Inc.)

구분	내용
2019.10	주식회사 엔알비 설립 (자본금 100 백만원, 대표이사 강건우, 감사 김영준)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 길 19, 11 층(여의도동)
2020.04	[본점 이전]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93, 203 호(오식도동)
2020.06	[본점 이전]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93, 205 호(오식도동)
2020.10	벤처기업 인증
2020.11	[자회사 설립] 주식회사 엔알비비에스 설립
2021.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KTR 인증센터, ISO 9001:2015)
2021.02	모듈러 연구개발부서 설립
2021.04	건설업 면허 등록(건축공사업)
2021.04	브릿지스쿨(Bridge School) 독일의 Reddot 어워드 2021 본상 수상
2021.06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
2021.06	우수기술기업 인증(나이스디앤비, 이동형 모듈러 제조기술)
2021.12	조달청 다수공급계약 체결
2021.12	전라북도도지사 표창장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022.0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22.03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 - 미래 ESV 개인투자조합 제 1 호, 1,228 주 유상증자 - 제이비(JB)기술지주 개인투자조합 제 2 호, 368 주 유상증자
2022.05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 - KTBN 18 호 벤처투자조합, 6,143 주 유상증자 - 코오롱 2021 이노베이션 투자조합, 3,072 주 유상증자 - SLi Next 이노베이션 펀드, 3,072 주 유상증자
2022.05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단일 공장 취득(군산 제 1 공장, 군산시 군산산단로 96)
2022.06	전북지역 스타기업 지정
2022.06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14 주 유상증자)
2022.11	브릿지스쿨(Bridge School) 미국 IDEA 어워드 2021 Social Impact 디자인상
2022.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2022.12	한국공학한림원 선정 2022 산업기술성과 선정
2023.01	Kibo-Star 벨리 기업 선정

구분	내용
2023.03	[본점 이전]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비응도동)
2023.04	G-PASS 기업 선정
2023.11	대통령 표창패 수상(대표이사 강건우)
2023.12	제 3 차 배정 유상증자(모비릭스 펀드 1 호, 2,250 주 유상증자)
2024.01	[행정구역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비응도동)
2024.03	무상증자(700%)
2024.04	액면가액 10,000 원 → 500 원 변경
2024.10.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중소벤처기업부)
2024.12.	코어 이노베이션 코리아 2024 최우수상 수상(전북 대상)
2024.12	중간 모멘트 골조 기준적합성 인증서 취득(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2025.01	콘크리트 기술인증서 취득(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
2025.01	제 1~3 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2025.06	2025 년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선정
2025.07	제 43 회 정진기언론문화상 수상(벤처기업창업상)
2025.07	코스닥시장 상장
2025.08	국토교통부 공업화주택 인정(NRB 라멘조 PC 모듈러 공업화주택)
2025.11	모듈러 공장 추가 취득(김제 공장, 김제시 백산면)
2026.01	PC 중간 및 특수 구조벽체(NRB-Hyper CORE) 기준적합성 인증(대한건축학회)
2026.01	모듈러 공장 추가 취득(군산 제 2 공장, 군산시 오식도동)

##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26. 4. 22.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된 회사의 등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상호: 주식회사 엔알비(NRB, inc)
- 회사성립연월일: 2019. 10. 24.
- 법인등록번호 : 110111-7269370
- 법인등기부상 등기번호 : 006240
- 본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비응도동)
- 광고방법: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and-rb.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동아일보에 게재한다.

- 1주의 금액 : 금 500원
-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 100,000,000주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보통주식 10,898,683 주
- 자본의 총액: 5,449,341,500 원
- 목적:
  1. 모듈러 컨설팅업
  2. 모듈러 설계업
  3. 모듈러 건축업
  4. 모듈러 자재개발업
  5. 모듈러 생산업
  6. 모듈러 판매업
  7. 모듈러 임대업
  8. 지붕 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9. 건축공사업
  10. 토목건축공사업
  11. 실내건축공사업
  12. 주택건설업
  13. 주택건설 및 분양 판매업
  14.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임대업
  15.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16. 부동산 신축판매 및 매매업
  17. 대지 및 택지 조성사업
  18. 전기 공사업
  19. 소방설비 공사업
  20. 전기통신 공사업
  2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임원에 관한 사항:

성명	법률상 지위	취임 또는 중임 일자
강건우	사내이사	2026. 3. 26. 취임
	대표이사	2026. 3. 26. 취임
김동우	사내이사	2026. 3. 26. 취임
김명진	사내이사	2026. 3. 26. 취임
권순일	사외이사	2024. 3. 27. 취임
	감사위원	2024. 3. 27. 취임
도인환	사외이사	2024. 5. 24. 취임
	감사위원	2024. 5. 24. 취임
남영재	사외이사	2025. 5. 12. 취임
	감사위원	2025. 5. 12. 취임

■ 명의개서대리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023. 12. 22. 설치, 2024. 1. 9. 등기

■ 전환사채

제1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총액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오십억사천팔백원(금 5,000,004,8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일십억원권(금 1,000,000,000원) 4매, 금 오억원권(금 500,000,000원) 1매, 금 일억원권(금 100,000,000원) 4매,  
금 일억사천팔백원권(금 100,004,800원) 1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전환사채의 보통주식으로서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으로 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1주(액면금액 500원)당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금 [15,800] 원으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 대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및 IPO 공모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발행주식수 + [실발행주식수 X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본 항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4.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5.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6.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본건 전환사채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7. 본 항에 정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④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⑥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의 규정을 따른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6년 1월 17일)부터 만기일의 전일(2029년 1월 16일)까지 본건 전환사채를 언제든지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25년 01월 17일 발행      2025년 04월 16일 등기<sup>1</sup>

■ 전환사채

제3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총액

금 오십억사천팔백원(금 5,000,004,800원)

1. 각 전환사채의 금액

금 일십억원권(금 1,000,000,000원) 4매, 금 오억원권(금 500,000,000원) 1매, 금 일억원권(금 100,000,000원) 4매,

금 일억사천팔백원권(금 100,004,800원) 1매

1.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퍼센트

1. 본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의 조건

---

<sup>1</sup> 2025년 1월 20일 등기 이후 단순 오기 등으로 인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날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건 전환사채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으로 하고,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1주(액면금액 500원)당 발행가액(이하 "전환가액")은 금 [15,800] 원으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식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 대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발행가액,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그 당시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그 하회하는 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 및 IPO 공모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실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액/시가}] / (\text{기발행 주식수} + \text{신발행 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본 항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4.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회사가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5.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주총회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6.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이 본건 전환사채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가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7. 본 항에 정한 전환가격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④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⑤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⑥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의 규정을 따른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1. 전환청구기간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26년 1월 17일)부터 만기일의 전일(2029년 1월 16일)까지 본건 전환사채를 언제든지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25년 01월 17일 발행      2025년 04월 16일 등기<sup>2</sup>

■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임원 또는 직원

---

<sup>2</sup> 2025년 1월 20일 등기 이후 단순 오기 등으로 인한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날짜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1조의 3 제 3항에 의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이고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한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 30조 제 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또한, 회사의 상장 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간동안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및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게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상법 제 542조의 8 제 2항 제 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상법 제 542조의 8 제 2항 제 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회사 또는 제 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3. 제 2 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상법상 주요주주가 되는 자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년 11월 30일 설정      2022년 12월 12일 등기

### 3. 정관 등 회사의 주요 내부 규정

#### 가. 정관(2026. 3. 26. 개정, 시행)<sup>3</sup>

- 회사는 2026년 3월 26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관을 핵심적으로 변경.
- 주요 개정 사항은 독립이사 제도 반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주주 보호 의무 명문화, 감사위원 선임·해임 관련 의결권 제한 정비 등으로, 상장회사 지배구조 및 주주권 보호에 관한 최근 상법 개정 취지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 검토의견

##### 1) 이사의 수 및 독립이사 제도 정비(제 38 조 및 부칙)

- 회사는 기존 정관상 “사외이사” 라는 명칭을 “독립이사” 로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의무 구성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에서 “3분의 1 이상” 으로 상향 조정함.
- 이는 상장회사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정 상법상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구성비율 강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2) 이사의 직무와 의무(제 42 조)

- 회사는 정관 제 42 조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및 주주” 로 명시하였으며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관에 반영하였음.
- 이는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및 주주 간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주주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에 관한 최근 상법 개정 방향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
- 특히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합병, 영업양수도, 자기주식 처분 등 주주의 지분을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거래에 있어 이사회가 거래의 필요성, 조건의 공정성, 주주가치 훼손 여부를 검토할 근거 규정으로 기능할 수 있음.

---

<sup>3</sup> 2025년 하반기 중 정관 개정 사항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점(2026. 5.)까지 업데이트된 가장 최신의 정관(2026. 3. 26. 개정)을 기준으로 검토함.

### 3)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 선임·해임 관련 의결권 제한(제 51 조 제 5 항)

- 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였음.
-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 구성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4)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제 43 조 및 관련 내부 규정)

- 회사는 정관 제 43 조에서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결의 또는 별도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7.27.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임.
-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임원 퇴직금 역시 별도 규정에 따라 산정되도록 하고 있어,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5) 자기주식 보유·처분 및 소각 관련 정비 필요

- 현행 정관 제 12 조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기주식의 보유 및 처분 절차,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 보호 원칙, 예외적 처분 사유 및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개정 상법 (2026. 3. 6. 시행) 제 341 조의 2 는 자기주식 처분 시 상법 제 418 조(신주인수권)의 신주발행 절차를 엄격히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우선 배정해야 하며,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는 엄격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 3 자에게 처분할 수 있음.
- 회사가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현시점에서 문제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 준용 조항을 신설 권고.

### 6) 자산규모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 회사의 2025 년 말 사업보고서상 연결 기준 자산총계는 약 1,753 억 원으로 확인되므로, 자산총액 2 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대규모 상장회사 관련 특례의 적용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나. 이사회운영규정

### ▶ 검토의견

#### 1) 이사회 구성 요건 및 명칭 불일치 (제 5 조 제 3 항)

- 2026. 3. 26. 개정된 정관(제 38 조)은 개정 상법 요건을 일부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이사회 규정의 경우 2022. 11. 30. 제정된 이후 개정된 바 없으므로, 현재 이사회 구성 요건 및 명칭이 정관에서 규율한 바와 불일치 함.
- 따라서 이사회운영규정 제 5 조 제 3 항 역시 정관에 상응하도록 "이사회에는 이사총수의 3 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둔다"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규정 전반(제5조 제1항 등)에 기재된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정비할 것을 권고(이사회 운영규정 제 18 조 제 2 항은 위 규정이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불일치가 곧바로 중대한 법률상 하자로 평가되지는 않으나 내부규정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정비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2) 감사 제도 관련 조항 정비 권고

- 이사회 운영규정 제 7 조, 제 10 조 제 2 항, 제 11 조, 제 13 조 및 제 16 조 등은 여전히 “감사”의 출석, 소집청구, 이사회 통지, 이사회 보고, 의사록 기명날인 등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현행 지배구조에 맞추어 “감사”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으로 정비할 것이 요구됨.
- 특히 이사회 의사록 작성과 관련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의 운영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과 의 정합성을 확인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이사의 충실의무 및 주주 보호 관점의 절차 보완 방안 마련

- 이사회 운영규정 제 12 조 제 2 항은 이사회 일반 결의요건을 정하면서, 상법 제 397 조의 2 에 따른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상법 제 398 조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음. 또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도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이사의 자기거래 및 회사기회 유용 등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내부통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

- 다만, 개정 정관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및 주주 보호 의무가 명문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사회 운영 규정에도 주요 자본거래 또는 주주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관한 검토 절차를 점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과의 정합성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 절차 관련)**

- 이사회 운영규정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 (15)는 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한편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10 조 제 4 호는 자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거나 비정상적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 절차와 감사위원회 사전 심의·승인 절차가 병존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감사위원회 심의·승인과 이사회 결의 사이의 선후관계 및 심의 결과의 이사회 보고 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사전 심의 후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회 의안자료 또는 의사록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비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다. 기타 규정**

**▶ 검토의견**

- 회사는 이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정 외에도 현재 아래와 같은 업무 관련 내부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이사회 운영 규정,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감사의 직무규정, 위임전결규정, 내부신고제도 규정,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컴플라이언스 운영 규정, 전산 보안 지침 등

**4.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이사록 (2025년 하반기)**

**가. 주주총회의사록**

- 2025년 하반기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 사실 없음.

**나. 이사회이사록**

1) 2025. 7. 16. 이사회이사록(1)

일시	2025. 7. 16. 17:00
출석인원	이사총수 6명 / 출석이사수 6명
의안 및 결과	제 1 호 의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주발행의 건 → 기명식 보통주 47,619 주 발행을 승인. 발행가액 21,000 원, 발행방법은 사모 방식, 배정 대상은 엔에이치투자증권(주)으로 정함.

2) 2025. 7. 25. 이사회이사록(2)

일시	2025. 7. 25. 10:00
출석인원	이사총수 6명 / 출석이사수 6명
의안 및 결과	제 1 호 의안 : 임원 성과급 지급 및 연봉인상의 건 → 2024년 경영성과 및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임원 성과급 지급, 대표이사 연봉 조정 등을 승인. 제 2 호 의안 : 특별상여금 지급의 건 → 상장 기념 특별상여금으로 임원 및 직원 대상 총 147,000,000 원 지급 승인.

3) 2025. 7. 25. 이사회이사록(3)

일시	2025. 7. 25. 11:00
출석인원	이사총수 6명 / 출석이사수 6명
의안 및 결과	제 1 호 의안 : 신용장 개설 승인 건 → 공장자동화 설비 수입을 위한 수입·연지급 방식 신용장 개설 승인. 차입금액 미화 110 만 달러, 차입처 및 보증상대처는 우리은행으로 정함.

4) 2025. 10. 31. 이사회이사록(4)

일시	2025. 10. 31. 09:00
출석인원	이사총수 6명 / 출석이사수 6명
의안 및 결과	제 1 호 의안 : 소규모 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협약 체결의 건

	→ 완도중도·고흥도양 소규모 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협약 체결 승인. 총사업비 61,074,996,000 원, 엔알비 지분 49%,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 ~ 2027. 12. 예정.
--	--

5) 2025. 10. 31. 이사회 의사록(5)

<b>일시</b>	2025. 10. 31. 10:00
<b>출석인원</b>	이사총수 6명 / 출석이사수 6명
<b>의안 및 결과</b>	제 1 호 의안 : 사내규정 제정의 건 → 시스템보안 및 영업비밀보호 규정 제정 승인. 제 2 호 의안 : 사내규정 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감사 직무규정 개정 승인. 제 3 호 의안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계획 승인.

6) 2025. 11. 24. 이사회 의사록(6)

<b>일시</b>	2025. 11. 24. 13:00
<b>출석인원</b>	이사총수 6명 / 출석이사수 6명
<b>의안 및 결과</b>	보고안건 1: 신규 임원 선임의 건 → 이영범, 조재훈, 이홍구 신규 임원 선임 보고. 보고안건 2: 2026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 건 → 한영회계법인 선임 관련 사항 보고. 제 1 호 의안 : 신규 공장 취득 승인의 건 → 군산시 소재 토지·건물·기계기구 취득 승인. 제 2 호 의안 : 이사회 구성 관련 보고 및 향후 절차 승인의 건 → 사내이사 임기만료 관련 후임 이사 선임 절차 승인. 제 3 호 의안 : 사업확장 추진을 위한 사전 승인 및 한도 설정의 건 → 대륜중공업 토지·건물 매입 추진, 예당 2 산업단지 매입확약 예약신청금 납입 및 관련 한도 승인.

7) 2025. 11. 24. 이사회 의사록(7)

<b>일시</b>	2025. 11. 24. 15:30
<b>출석인원</b>	이사총수 6명 / 출석이사수 6명

<b>의안 및 결과</b>	제 1 호 의안 : 기업시설자금 대출의 건 → 공동주택 모듈러 제작을 위한 추가 공장 매입자금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60억 원 차입 승인. 차입기간은 차입일로부터 1년, 상환재원은 영업수익금.
----------------	--

8) 2025. 12. 29. 이사회 의사록(8)

<b>일시</b>	2025. 12. 29. 09:00
<b>출석인원</b>	이사총수 6명 / 출석이사수 6명
<b>의안 및 결과</b>	제 1 호 의안 : 유형자산 양수 승인의 건 → 군산시 오식도동 857 소재 부동산 일체 양수 승인. 매매대금 360억 원, 계약금 36억 원, 잔금 324억 원은 2026. 2. 28. 지급 예정. 자금조달은 사내 유보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으로 정함.

▶ 검토의견

1) 대규모 자산 취득 및 주요 계약의 공시 의무

- 2025년 하반기 중 회사는 ① 완도중도·고흥도양 소규모 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협약 체결(총사업비 약 610억 원, 당사 지분 49%), 360억 원 규모의 군산시 소재 부동산 일체 양수, ② 공장 매입 목적의 60억 원 차입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자금 집행 및 수주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
- 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규모(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 등)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이나 단일판매·공급계약은 한국거래소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당사의 공시 이력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내지 당사 공식 홈페이지 IR/공시 게시판에서 확인 결과, 위 주요 결의 사항 중 의무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단일판매·공급계약(2025. 10. 31. 접수)' 및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2026. 1. 19. 접수)' 건에 대하여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하게 공시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 상장사로서의 공시 통제 시스템이 이사회 승인 프로세스와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집행의 적정성 확보

- 회사는 코스닥 상장 직후인 2025. 7. 25. 이사회를 통해 ① 임원 성과급 지급 ② 대표이사 연봉 조정 ③ 상장 기념 특별상여금(총 1억 4,700만 원) 안건에 대하여 재적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상법 및 정

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음.

- 한편 회사의 임원보수규정은 임원 성과급 지급 한도를 '당해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에 공시된 2024 년도 감사보고서(2025. 4. 1.접수)상 확정 영업이익(금 6,318,858,480 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성과급 지급 한도는 약 6.31 억 원인 바, 금번 이사회에서 승인된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총액은 해당 한도 내에서 이루어짐.

### 3) 내부통제 규정 정비 및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 회사는 2025. 10. 31. 이사회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감사 직무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보안 및 영업비밀보호 규정을 신규로 제정하였고, 동일 이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
- 이는 신규 상장사로서 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을 고도화하고, 경영진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사회 차원에서 충실히 이행하려는 조치로서 준법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4) 사내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

- 2025. 11. 24.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임기만료 관련 후임 이사 선임 절차 승인'의 건을 다룸.
- 회사의 정관 제 38 조는 이사의 정원을 '3 명 이상 7 명 이내'로 정하고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사내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2025. 11. 말)부터 후임 사내이사가 선임된 제 7 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2026. 3. 26.)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 386 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 중 종전 사내이사들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보유하는 이른바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법리가 적용됨.
- 등기실무 및 판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위 권리·의무 존속 기간 중에는 임기만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고 후임 이사 취임 시 종전 이사의 퇴임등기와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를 동시에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바, 본 건의 경우 후임 이사의 취임일(2026. 3. 26.)부터 13 일 이내인 2026. 4. 8.에 변경등기가 경로됨으로써 「상법」 제 317 조 제 3 항 및 제 183 조에 따른 본점소재지 2 주 이내의 변경등기 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음.
- 나아가 회사가 본 건을 계기로 임원 임기의 만료 시점을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점(매년 3 월)에 일치시

키는 방향으로 임원 임기 일정을 일원화함에 따라, 향후 동일한 임기 공백 상황의 재발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평가됨.

## 5. 최근 3년간 자본금 변동 등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6 년 제출 사업보고서,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① 2024.3. 무상증자(700%) 및 2024.4. 주식 액면분할(10,000 원 → 500 원)이 진행되었으며, ② 2025.7.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크게 증가하였음(유상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10,427,139 주, 자본금 5,213,569,500 원). 이후 ③ 2025.1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 82,700 주가 발행되었고, ④ 2026.02. 제 2 회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신주 316,456 주가 추가 발행되었음.
- 최근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26. 4. 3. 자로 72,388 주의 신주가 추가 발행되어 보고서 작성일 현재 발행 주식총수가 10,898,683 주로 증가함. 이에 대하여 회사가 제출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현황표」를 교차 검증한 결과, 본 건 신주 발행은 당사 소속 임원 및 직원들의 2026 년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총 72,388 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기준 일자	구분 (변동 사유)	증가 주식수	누적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원)
2023 년 말 (제 5 기)	기초 (보통주 및 우선주)	-	51,747 주	517,470,000
2024 년 말 (제 6 기)	무상증자, 액면분할(1 만→5 백) 및 우선주 전환	8,227,773 주	8,279,520 주	4,139,760,000
2025 년 기말 (제 7 기)	코스닥 상장 (공모 및 주관사 의무인수분)	2,147,619 주	10,427,139 주	5,213,569,500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82,700 주	10,509,839 주	5,254,919,500
2026. 02. 04.	제 2 회 사모 전환사채(CB) 전환	316,456 주	10,826,295 주	5,413,147,500
2026. 04. 0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72,388 주	10,898,683 주	5,449,341,500

### ▶ 검토의견

- 2026 년 2 월 전환사채(CB) 전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신고 처리에 일부 시한 산정상의 이슈가 관찰되었으나, 해당 사안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38 조제 1 항제 8 호에 따른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시장신고사항의 신고시점 기산에 관한 절차적 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
- 실물사채로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법」 제 350 조에 따른 전환의 효력발생 시점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 신고시한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실무상

견해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산정상의 곤란성은 한국거래소 공시부 역시 실무상 인지하고 있는 사안으로 파악됨.

- 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전반적으로 법령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

## 6. 최근 3년간 자기주식 취득 등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엔알비 사업보고서, 주주명부 등) 및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기주식 취득 및 매각 내역은 없으며 최근 사업연도 말(2025. 12. 31.) 기준 자기주식 보유 내역 또한 없음.

## 7. 주권 관련 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등에 따르면,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증권대행기관)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두고 있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주권(전자증권)을 발행(전자등록)하고 있음.

## 8. 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등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미등기임원 포함)은 상장일부터 6개월간 보유 주식을 의무보유하여야 하며, 의무보유 기간 중에는 계좌 간 대체 및 질권설정·말소가 제한되므로(상장규정 제 2 조 제 18 호), 거래소 승인 없이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의무보유 위반에 해당함.
- 회사의 설명 및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12. 31.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 등 담보제공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9. 현재 주주에 관한 사항

### 가. 주식분포 현황 (2025. 12. 31. 기준)

주주	보유 주식수(주)	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강건우 외 3인)	5,055,840	48.11
코오롱 2021 이노베이션 투자조합 외 53,702명	3,073,525	29.24
이성규	560,000	5.33
케이티비엔(KTBN) 18호 벤처투자조합	491,440	4.68
증권금융(알파자산운용)	358,803	3.41

SLi Next 이노베이션 펀드	293,380	2.79
기타 10% 미만 주주	676,851	6.44
<b>합계</b>	<b>10,509,839</b>	<b>100.00%</b>

▶ 검토의견

- 2025. 12. 31. 기준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5,055,840 주, 합산 지분율은 48.11%로 확인됨. 위 지분율 및 최대주주등 의무보유 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 지분 구조상 최대주주 측의 지배력은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상장 직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동, 의무보유 대상 주식의 처분·담보제공, 임원 보유주식 변동 등은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관리사항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관련 제한 및 공시·보고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sup>4</sup> 주식소유 현황 (2025. 12. 31. 기준)

권리자명	보유 주식수(주)	비율(%)	비고
강건우	3,472,000	33.04%	최대주주
김동우	1,120,000	10.66%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강혜경	448,000	4.26%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누나)
김명진	15,840	0.15%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b>소계</b>	<b>5,055,840</b>	<b>48.11%</b>	

▶ 검토의견

- 2025. 12. 31. 기준 강건우는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임원이고, 김동우 및 김명진은 회사의 등기임원이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며, 강혜경은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됨.
- 위 최대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및 경영안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리대상에 해당하고, 강건우, 김동우 및 김명진은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등 내부자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회사 제공 자료 및 DART 공시 내용 등을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현재 회사 차원에서 임원 선임·퇴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증여, 담보제공 등 지분 변동 사유 발생 시 법무·공시 부서와 연계되는 사전보

<sup>4</sup> 최대주주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2 조 제 1 항 제 13 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함. 회사가 제공한 주주명부요약표상 김동우 및 김명진은 등기임원으로서, 강혜경은 최대주주의 누나로서 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어 있음.

고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라. 1% 이상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sup>5</sup>

권리자명	보유 주식수(주)	비율(%)	비고
이성규	560,000	5.33	직원
케이티비엔(KTBN) 18 호 벤처투자조합	491,440	4.68	-
증권금융(알파자산운용)	358,803	3.41	-
SLi Next 이노베이션 펀드	293,380	2.79	-
백상호	204,978	1.95	-
미래 ESV 개인투자조합 제 1 호	196,480	1.87	-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IMITED	167,055	1.59	-
증권금융(유통)	108,338	1.03	-
소계	2,380,474	22.65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주주명부요약표에 의하면 2025. 12. 31.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1% 이상 주주의 합산 보유주식수는 2,380,474 주, 합산 지분율은 22.65%로 확인됨.
- 위 주주 중 일부 벤처투자조합,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 주주는 향후 투자 회수 또는 장내외 매각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매도 물량을 출회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자료상 위 보유 현황만으로 회사의 상장 유지와 관련한 중대한 법률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이성규는 560,000 주, 5.33%를 보유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주주도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 또는 향후 지분 변동에 따라 5%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 관련 보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요 주주의 지분 변동 및 공시·보고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5. 12. 31. 기준 소액주주는 53,704 명, 소액주주 보유주식수는 3,089,365 주, 지분율은 29.39%로 확인되므로, 현재 자료상 주식분산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리스크는 확인되지 않음.

10. 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 등

<sup>5</sup> 원자료상 “코오롱 2021 이노베이션 투자조합 외 53,702 명” 은 3,073,525 주, 29.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개별 1% 이상 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 그룹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표에서는 제외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2025. 12. 31. 기준 회사 발행주식은 보통주 10,509,839 주 (자본금 5,254,919,500 원)임.<sup>6</sup>
- 회사는 과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종류주식을 발행한 바 있으나, 해당 주식은 2025년 7월 코스닥 상장 이전 전량 보통주로 전환청구가 이루어짐. 따라서 현재 발행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종류주식은 없음.

## 11. 의결권 신탁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2025. 12. 31. 기준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의결권 신탁,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의결권 위임 계약 등은 존재하지 않음.

## 12. 주주간계약서 등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명부 요약표 확인 결과, 코오롱 2021 이노베이션 투자조합 등 다수의 벤처투자조합이 지분을 분산 보유하고 있는 바, 과거 투자 유치 당시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가 존재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등록 재무적 투자자가 체결하는 투자계약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표준화된 양식을 기초로 작성됨이 일반적이고, 상장 시 효력상실조항은 해당 표준양식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며, 회사가 송부한 샘플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본 건의 경우도 표준화된 계약 양식을 사용함.
- 본건 투자자 특별권리는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법률적 리스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됨.

## 1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등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스톡옵션 현황 자료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회사는 과거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이력이 있으며, 2025. 12. 중 일부가 행사되어 신주 82,700

---

<sup>6</sup> 보고서 작성일 현재는 전환사채 전환 및 스톡옵션 행사 등이 반영되어 보통주 10,898,683 주(자본금 5,449,341,500 원).

주가 적법하게 발행된 바 있음.

▶ 검토의견

- 제공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샘플을 통해 최초 부여 당시의 절차적 적법성 및 잔여 물량의 행사 조건을 확인한 결과, 본 계약서 전문 및 행사가액 조정 조항(제 8 조 제 2 항 제 7 호) 등에서 「상법」과 함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6 조의 3)」을 명시적 근거로 삼아 적법하게 체결되었음.
- 또한 제 6 조 제 1 항에서 법정 의무 재직 기간인 '부여일로부터 2년 경과'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한 부여 취소 사유(제 13 조) 역시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어 최초 부여 당시의 계약 구조는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14. 전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 등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회사가 발행하여 미행사 상태로 남아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교환사채(EB) 등은 존재하지 않음.
- 전환사채(CB) 발행 및 잔액 현황 회사는 2025. 1. 13.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25. 1. 17. 자로 총 150 억 원(각 50 억 원) 규모의 제 1 회 ~ 제 3 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 현재 각 회차별 전환 현황 및 잔액은 다음과 같음.
  - ① 제 1 회 (에스엘아이 퀀텀 성장 2 호 펀드)  
: 권면총액 5,000,004,800 원 / 미전환 (잔액 유지)
  - ② 제 2 회 (코오롱 2021 이노베이션 외 1 인)  
: 권면총액 5,000,004,800 원 / 2026. 02. 04. 전량 보통주 전환 완료 (316,456 주 발행)
  - ③ 제 3 회 (우리 2022 스케일업 펀드)  
: 권면총액 5,000,004,800 원 / 미전환 (잔액 유지)

▶ 검토의견

1) 발행 절차 및 주요 계약 조건의 적법성

- 본건 제 1~3 회 전환사채는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2025. 1. 13. 자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발행되었음.

- 만기일 2029. 1. 17., 표면이율 2.0%,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7.0%, 최초 전환가액 15,800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관련 투자계약서 검토 결과 시가 하락 등에 따른 적법한 전환가액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2) 자금 사용 용도 제한 및 사후 관리 리스크

- 3 건의 투자계약서 모두 조달된 자금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의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투자금으로 제 3 자 대여나 타사 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음(제 6 조).
- 지정 용도 외 사용은 '기한의 이익 상실(제 18 조)' 및 원리금 즉시 상환 청구의 직접적 사유가 되므로 회사는 자금 집행 내역을 투자계약서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함.

## 3) 잠재적 주식 발행에 따른 지분 희석 리스크

- 보고서 작성일 현재 제 2 회 CB 는 보통주로 전환되어 자본금에 모두 반영되었으나, 미전환 상태인 제 1 회 및 제 3 회 CB(합계 약 100 억 원)의 전환권이 향후 전량 행사될 경우, 최초 전환가액(15,800 원) 기준으로 총 632,912 주의 신주가 추가로 발행됨.
- 이에 따라 향후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환권 행사 기한(2026. 01. 17. ~ 2029. 01. 16.) 도래에 따른 주식 수 변동 및 공시 관리에 유의.

## 4) 상장 전 사모 발행에 따른 증권신고서 미제출(간주모집) 제재 리스크

-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6 개월 이내에 50 인 미만에게 청약 권유를 했더라도, 발행일부터 1 년 이내에 50 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면 '간주모집'으로 보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특히 벤처펀드나 투자조합으로부터 pre-IPO 투자를 받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청약 권유 대상자(50 인)를 산정함.
- 회사가 제출한 제 1~3 회 전환사채 투자계약서(2025. 1. 16. 체결)를 확인한 결과, 각 계약서의 별지 1 제 7 조 및 제 10 조에 '권면의 매수를 50 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 년 이내 권면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과 '발행 후 1 년간 전환권 행사를 금지'하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함.
- 따라서 자본시장법령이 요구하는 유효한 전매제한조치가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므로 간주모집 위반에 따른 제재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15. 회사의 사채발행 등

- 앞서 검토한 제 1~3 회 사모 전환사채 150 억 원 외, 회사는 2025. 6. 26.자로 총 30 억 원 규모의 '일반 무기명

식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

- 해당 사채는 만기 1년~5년에 따라 제 4-1 회부터 제 4-5 회까지 각각 6억 원씩 분할 발행되었음.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이를 전액 인수한 후 '중진공 2025 제 1 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SPC)'에 양도하여 유동화사채를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방식의 정책자금 조달임.

▶ 검토의견

- 본 사모사채 발행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자산유동화 거래로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케일업 P-CBO 프로그램에 따른 정책자금 조달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구조 및 발행절차에 있어 법률상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 또한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신용공여(외부 신용보강)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후순위 유동화사채 인수(내부 신용보강)가 결합되어 있어, 회사로서는 만기 1년 내지 5년의 분할구조를 통하여 중장기 자금을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거래로 평가됨.
- 본 계약 제 12 조 및 제 13 조에 따라 조달자금은 수협은행에 개설된 지정전용계좌를 통하여 회사의 통상적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고 동 계좌상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인수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를 위한 근질권이 설정되며(제 22 조), 제 13 조 제 3 항 및 제 14 조에 따라 자금사용내역표를 자산관리자인 다올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제 16 조 및 제 17 조에 의하여 정관 변경,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처분 및 자금차입, 대표이사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는 자산관리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별지 5 의 투명경영 이행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정책자금 P-CBO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표준적 약정사항으로서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회사가 종전부터 운영하여 온 내부통제 및 회계처리 절차에 따라 자금의 용도내 사용과 자산관리자에 대한 보고·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 본 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상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 16. 회사의 임원 현황 등

가. 회사의 임원 현황(2025. 12. 31. 기준)<sup>7</sup>

순번	성명	직급명	상근/ 비상근	등기임원 여부	타회사 겸임현황 (교수직 제외)
1	강건우	대표이사	상근	등기	(주)브릿지 건축사사무소 사내이사
2	김동우	사내이사	상근	등기	해당사항 없음
3	김명진	사내이사	상근	등기	해당사항 없음
4	권순일	사외이사 (감사위원)	비상근	등기	권순일 회계세무사사무소
5	도인환	사외이사 (감사위원)	비상근	등기	도인환 세무회계사사무소
6	남영재	사외이사 (감사위원)	비상근	등기	법무법인 로앤에이
7	김갑득	사장	상근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8	오진택	전무	상근	미등기	(주)브릿지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9	최진달미	전무	상근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10	김춘식	전무	상근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11	최대현	전무	상근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12	정윤영	전무	상근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13	김태우	상무	상근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14	주현철	상무	상무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15	이봉구	상무	상근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16	이종명	상무	상근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17	조재훈	상무	상근	미등기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회사 제공 자료 및 사업보고서상 타회사 겸직 현황을 검토한 결과, 강건우 대표이사의 (주)브릿지건축사사무소 사내이사 겸직, 오진택 전무의 (주)브릿지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겸직, 사외이사들의 전문직 관련 겸직 외에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이사회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겸직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나. 회사와 임원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 회사가 제공한 임원계약서 샘플 및 관련 인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계약의 주요 조건을 검토한 결과, 회사는 등기 및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진 전반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형태의 임원계약'을 체결하여 상법상 임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검토의견

<sup>7</sup> 위 표는 2025. 12. 31. 기준 회사 제공 임원 현황 및 보고서 제출일 이후 확인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함.

- 샘플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을 '경영성과 향상'으로 명시하고,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로 정하여 경영진의 법적 지위(위임 관계)를 명확히 함.
-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상법 및 민법상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한 것으로,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계약서 제 10 조 및 제 11 조에서 보수와 퇴직금을 별도의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르도록 명시.

## 17. 회사의 임원의 보수규정 등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 임원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는 회사 정관(제 43 조 및 제 56 조 등)에 따라 2023 년 7 월 27 일 자로 제정된 ① 임원보수규정 및 ②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시행되고 있음.
- 본 진단에서는 실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5 년간 임원 보수 및 지급 내역(A.240)』과 2024 년 도 별도 감사보고서상의 재무 수치를 대조·검토함.

### ▶ 검토의견

#### 1) 보수 및 퇴직금 체계의 제도적 적정성

- 회사의 임원보수규정은 등기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음. 또한 성과급 지급 한도를 “당해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회사의 재무 상태를 초과하는 과도한 보상 집행을 방지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함. 아울러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의 승인 절차를 규정하여 체계적인 보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재임 1 년당 1 개월분(1 배수)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 한도 내의 보수적인 수준으로 부당한 이익 분여 리스크가 없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며, 특별위로금의 한도를 “퇴직 시 연봉의 100% 이하”로 명시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거액 자금 집행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음.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제 9 조)를 마련하여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
- 두 규정 모두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됨.

## 2) 실제 집행 내역의 규정 준수 여부

- 2024 년도 별도 감사보고서상 확정 영업이익(6,318,858,480 원)에 따른 성과급 지급 한도는 약 6.31 억 원 임. 2025. 07. 25. 이사회에서 결의된 상장 기념 특별상여금 등 총 1.47 억 원의 집행은 해당 한도를 준수 함.
- 2025 년 일부 임원(김명진, 최진달미 등)의 보수 급증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기인한 것이며, 회사가 이를 급여와 구분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종속회사(브릿지건축사사무소) 대표를 겸직 중인 임원(오진택 부사장)의 보수를 모회사와 자회사가 적법하게 분리 지급하여 부당지원 리스크를 예방함.

## 18. 회사의 타법인 출자 내역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종속회사(자회사)로 '주식회사 브릿지건축사사무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종속회사는 과거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편입되었으며, 2025 년 하반기까지 지분 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법적 분쟁이나 권리 제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19. 회사의 자회사 및 영업소 현황 등

- 회사의 종속회사(자회사)로는 '주식회사 브릿지건축사사무소'가 존재함.
- 한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회사는 본점 외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모듈러공장, 서울사무소, 모듈러2 공장 및 모듈러3 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현재 유효한 지점 등기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장들은 등기된 지점이 아닌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 또는 공장·사무소로 파악됨.

## 20. 최근 3 년간 이해상충 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내역

### 가. 특수관계인 현황 (2025. 12. 31. 기준)

- 「상법」 제 542 조의 8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당사의 주요 특수관계인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개인 (최대주주 및 임원진)

- 최대주주 및 친족 : 강건우(대표이사) 및 강혜경(최대주주의 누나)
- 등기임원 : 김동우, 김명진(사내이사), 권순일, 도인환, 남영재(사외이사) 등 등기임원 전원

2) 법인 (종속회사) : 주식회사 브릿지건축사사무소

3) 기타 (계열회사 임원) : 오진택 전무 (당사 미등기 임원이자 종속회사의 대표이사 겸임)

## 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

- 회사의 2023년 제9차 이사회 의사록(2023.12.28. 개최)에 따르면, 회사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브릿지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 용역 등 계속적 내부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이사회에서 연간 50억 원 한도의 거래를 포괄 승인한 내역이 확인됨.
- 또한 회사가 제공한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25년 중 회사와 주식회사 브릿지건축사사무소 사이에는 프리패브 UBR 욕실 설계용역, 사무소 전대차 차임 및 관리비 등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회사의 특수관계자 검토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회사는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검토, 특수관계자와의 보증 제공 변동 검토,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증감 분석, 종속기업과의 거래 상호대사 및 주요 경영진 보상내역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 ▶ 검토의견

- 회사와 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 「상법」 제 398 조가 정한 자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함.
- 다만 종속회사와의 거래가 모두 곧바로 「상법」 제 398 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주식회사 브릿지건축사사무소와의 거래는 회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및 코스닥 상장심사·상장관리상 이해관계자 거래로서, 거래조건의 공정성, 내부승인 절차, 회계처리 및 공시·보고 체계의 적정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됨.
-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종속회사와의 계속적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포괄승인을 받은 내역이 있고, 거래처원장상 거래내역도 상호 대사된 것으로 보임. 다만, 위 거래의 구체적 계약서, 거

래조건 산정 근거 및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시장가격과 합리적인 거래조건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자료는 추가 확인이 필요함.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운영 규정」 및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자 거래 발생 시 사전 법무검토, 이사회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향후에도 거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관련 현황을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거래 발생 시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음.

## 21.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내역

- 현재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 내역은 존재하지 않음.

## 22. 최근 3년간 회사의 주주간 분쟁 등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의 소송 현황 자료(F.1.10, F.1.20),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 등 제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회사의 주주 간 분쟁, 경영권 분쟁, 주주대표소송 등 회사 내부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분쟁 내역은 존재하지 않음.
-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 종결된 소송 건들은 모두 외부 제 3 자(경쟁사, 도급업체 등)와의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영업상 분쟁으로 파악됨.

### ▶ 검토의견

- 회사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주주 간 이견에 따른 법적 조치나 경영권 위협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 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요 주주 간 결속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함.
- 상장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의 안정성 관점에서 회사의 경영권 관련 법률적 결격 사유나 우발채무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3. 최근 3년간 회사의 중대한 영향력 있는 회사 운영 관련거래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 작성일 기준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이 파악됨.

**1) 소규모 주택(완도중도, 고흥도양)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협약**

- 거래 규모: 총사업비 약 610억 원 중 당사 지분(49%)에 해당하는 수주액.
- 결의일: 2025. 10. 31. 이사회 승인 완료.

**2) 대규모 유형자산 취득 (공장 매입)**

-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57 소재 부동산(구 대륜중공업) 일체 양수.
- 거래 규모: 매매대금 360억 원.
- 결의일: 2025. 11. 24. 사전 승인 한도 설정 후, 2025. 12. 29. 최종 자산 양수 승인 완료.

**3) 사모사채 발행을 통한 정책자금 조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케일업 P-CBO 프로그램에 따라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이표채) 발행.
- 거래 규모 총 30억 원(만기 1년 내지 5년에 따라 회차별 각 6억 원씩 분할 발행).
- 발행일 : 2025. 6. 26.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인수(인수 후 중진공 2025 제 1 차스케일업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

**4) 대규모 금융 차입 및 담보 제공**

- 상기 군산 신규 사업장 매입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자금 대출을 실행.
  - 중소기업은행 차입 : 2026. 1. 16. ESG 경영성공지원시설자금 등 총 300억 원 차입 승인.
  - 우리은행 차입: 2025. 11. 24. 기업시설자금 60억 원 차입 승인.
- 상기 부동산 취득과 연계하여 해당 취득 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근저당권 또는 신탁수익권 설정)

**5) 타법인 주식 취득 및 계열사 내부거래관계회사 편입**

- 2026. 3. 10. 주식회사 유비구조엔지니어링 보통주 1,000주(지분 25%)를 2,500만 원에 취득
- 종속회사(브릿지건축사사무소) 및 관계회사(유비구조엔지니어링)와의 용역 거래에 대하여 2026년 연간 거래한도 각 20억 원(총 40억 원) 승인

**▶ 검토의견**

- 본건 거래들은 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서 정한 주요경영사항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거래로 판단됨. 관련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거래들은 모두 「상법」 제393조 제1항 및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적법하게 부의되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 의사결정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함.

- 또한 2025. 6. 26.자로 이루어진 총 30억 원 규모의 제4-1회 내지 제4-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스케일업 P-CBO 프로그램에 따른 정책자금 조달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형적 자산유동화거래에 해당하고, 「상법」 제469조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사채발행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확인됨. 동 사채발행 역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서 정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시의무를 이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됨.
- 자산양수도 거래의 경우에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서 정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율공시 또는 주요경영사항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바, 회사는 각 거래의 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거래소 공시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적시 공시의무를 이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주식회사 유비구조엔지니어링의 지분 취득 및 종속회사·관계회사와의 용역거래 한도 승인은 「상법」 제542조의9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향후 동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상장유지에 필요한 공시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요컨대 본건 사모사채 발행, 대규모 사업협약 체결, 부동산 매입 및 신규 차입 등 일련의 거래들은 회사의 자금조달 채널 다변화, 생산능력 확대 및 신규 사업영역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서, 적법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장유지 관점에서 특별한 법률적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아니하며, 향후에도 개별 거래의 진행 단계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거래소 공시규정에서 정한 수시공시 및 정기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 상장적격성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4. 임직원 주식 소유 현황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주주명부 및 임원명부 등)에 따르면, 2025. 12. 31. 기준 임직원의 주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최대주주 강건우(33.04%) 및 특수관계인인 김동우(10.66%), 김명진(0.15%) 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지분 소유 현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함.

순번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	비고	직급
1	강건우	3,472,000	33.04%	최대주주	대표이사
2	김동우	1,120,000	10.66%	등기임원	사내이사 (전무)
3	김명진	15,840	0.15%	등기임원	사내이사 (상무)
4	이성규	560,000	5.33%	임직원 공동배정	사업관리실 차장

▶ 검토의견

- 회사는 「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5 조를 통해 임원 및 직원이 자사주 매매 시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명확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중임.
- 특히 한국거래소의 K-ITAS(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를 등록하여 통보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한 점은 임직원의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주는 효율적인 내부통제 방식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5 영업일 이내 보고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임.
- 한편 「내부정보관리규정」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 14 조)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원칙(제 16 조)을 정하여 임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운영 규정」 제 9 조 및 「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7 조에 명시된 전 임직원 대상 연 1 회 이상의 정기 법률 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 우리사주조합 지분의 경우, 퇴직이나 신규 가입 시 관련 법령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적절히 배분·환수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

## II. 인·허가

### 1. 사업자등록

2026. 2. 5.자 군산세무서장 명의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등록번호 : 433-87-01796
- 등록기관 : 군산세무서장
- 법인등록번호 : 110111-7269370
- 개업년월일 : 2019. 10. 30.
- 법인명/대표자 : 주식회사 엔알비 / 강건우
- 사업장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비응도동, (주)엔알비)
- 사업의 종류 :

업태	종목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모듈러 제조
제조업	모듈러 제조(금속)
건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서비스	모듈러 임대업
서비스	모듈러 컨설팅
서비스	모듈러 설계
서비스	모듈러 자재개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

#### ▶ 검토의견

- 회사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사업자로서 2021. 3. 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에 해당함.
- 위 사업자등록증의 종된사업장 명세에 따르면, 회사는 군산 본점 외에 모듈러공장, 서울사무소, 김제 소재 모듈러 제 2 공장, 군산 소재 모듈러 제 3 공장을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있음.<sup>8</sup>
- 특히 김제 소재 모듈러 제 2 공장은 2026. 1. 1.에, 군산 소재 모듈러 3 공장은 2026. 1. 29.에 각 개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최근 추가 취득 또는 개설한 주요 사업장에 관하여도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추가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현재 회사가 제공한 자료상 회사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단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상 문제

<sup>8</sup> 회사는 내부적으로 1) 군산 제 1 공장, 2) 군산 제 2 공장, 3) 김제 공장으로 분류하여 명명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등록된 순서로 제 1 공장, 제 2 공장, 제 3 공장으로 명명하였음.

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향후 신규 사업장 개설, 사업장 이전, 업태·종목 추가 등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상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인·허가 및 신고증

### 가. 공장등록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모듈러 제조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 1 공장, 제 2 공장 및 제 3 공장을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음.
- 제 1 공장 및 제 2 공장은 각 공장등록증명서상 공장등록이 확인되고, 제 3 공장은 사업자등록상 종된사업장 및 건축물대장상 일반공장으로 확인됨.

공장 구분	제 1 공장 본점	제 2 공장 김제	제 3 공장 오식도동 신규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 5길 18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로 1044(오식도동)
지번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36-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69-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식도동 857
보유구분	자가	자가	자가
공장 등록일	2022. 3. 18.	2026. 4. 30.	사업자등록상 종된사업장 개설일 2026. 1. 29.
공장의 업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제조업 / 모듈러제조
분류번호	25119	25119	-
공장부지 면적	102,476.9 m <sup>2</sup>	23,139.4 m <sup>2</sup>	119,495.9 m <sup>2</sup>
제조시설 면적	21,194.31 m <sup>2</sup>	12,514.994 m <sup>2</sup>	-
부대시설 면적	3,040.54 m <sup>2</sup>	692.379 m <sup>2</sup>	-
확인자료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비고	공장등록 확인	공장등록 확인	사업자등록상 종된사업장 및 건축물대장상 일반공장 확인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공장등록증명서에 따르면, 회사는 제 1 공장 및 제 2 공장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됨.
- 제 1 공장 및 제 2 공장의 업종은 모두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분류번호 25119 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의 모듈러 제조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현재 제공자료상 공장등록 자체에 관한 특별한 법률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제 3 공장의 경우, 2026. 2. 5.자 사업자등록증상 회사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해당 부동산의 주용도도 일반공장으로 확인되는 바, 이에 비추어 제 3 공장 역시 회사의 제조사업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초적인 등록 및 건축물 현황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제공된 자료상 회사의 주요 공장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률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향후 주요 생산시설 변경, 공장 증설, 신규시설투자, 유형자산 취득·처분 등 공시 또는 인허가 관리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공시의무 및 인허가 절차를 적시에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권고.
- 회사의 공장등록 및 공장 운영 현황은 현재 제공자료상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대한 법률상 리스크는 확인되지 않음.

## 나. 연구소 등록

- 2025. 3. 10.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정번호 : 제 2022111111 호
  - 연구소명 : 주식회사 엔알비 기업부설연구소
  - 주 연구소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비응도동)
  - 부 연구소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93 205 호(오식도동)
  - 최초인정일 : 2022. 3. 2.
  - 신고연월일 : 2025. 2. 26.
  - 발급일자 : 2025. 3. 10.
  - 인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 검토의견

- 본 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 조의 2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임.
- 연구소 인정서상 주 소재지(군산산단로 96)가 회사의 본점 및 제 1 공장 소재지와 일치함.
- 창업기업확인서 등에 기재된 과거 본점 소재지(산단남북로 193)에서 현재 본점 소재지로 주 연구소 이전 신고 및 변경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본점 소재지 연구소는 부 연구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

단됨.

-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KOITA 에 등록된 연구전담요원은 14 명으로 확인됨.
- 이는 중소기업 기준 연구전담요원 수(5 명)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문서[문서번호: BBzzFRWtKbCIQvxz, 발급일자: 2025. 3. 10.]는 발급일로부터 90 일 이 초과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유효성 을 검증할 수 없었으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 내의 연구소/전담부서 검색 시스템에서 같은 내용 이 확인됨.

#### □ 기업명

회사명	(주)엔알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 (주)엔알비 (비응도동)
기업소재지	벤처기업
기업유형	(주)엔알비

#### □ 연구소명

연구소/전담부서명	(주)엔알비 기술연구소
연구소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 (주)엔알비 (비응도동)
최초 인정일	2022-03-02
연구분야	금속

#### 다. 건설업 등록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www.kiscon.net>)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하여 2024. 5. 31. 건설업 등록을 하였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하여 2024. 7. 4. 건설업 등록을 함.

#### 라. 기타 인·허가

- 회사가 제공한 각종 인증서 및 확인서 현황을 검토한 결과, 벤처/특례 상장에 유리한 국가 인증을 적법하

게 유지하고 있으나, 관급 입찰과 직결되는 일부 품질 인증의 만료 및 핵심 인·허가 서류의 누락이 확인됨.

## ▶ 검토의견

### 1) 중소기업 및 벤처 상장 특례 관련 인증

- 상장예비심사 시 기술성장기업 특례 적용 및 정부 사업 참여에 필수적인 인증들을 적법한 유효기간 내에 관리하고 있음(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 확인서, 창업기업 확인서 등).

### 2)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유지 현황

- 회사는 KTR 인증센터로부터 '건축용 모듈러의 설계, 개발, 제조, 설치 및 부가서비스' 부문에 대하여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을 취득한 이력이 있음(유효기간 2027. 1. 7.).

### 3) 모듈러 관련 인증 및 직접생산확인

- 회사는 모듈러 공법 관련 핵심 인증으로서 2025. 8. 2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NRB 라멘조 PC 모듈러 공업화주택(공동주택)”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해당 인정의 유효기간은 2025. 8. 21.부터 2030. 8. 20.까지이므로, 현재 제공자료상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조달 또는 관급 입찰 등 특정 거래에서 요구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해당 거래 수행 시 최신 증명서 보유 여부를 실무적으로 확인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3.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내역 등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모듈러 건축 사업(설계·제조·시공)과 관련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 조에서 정하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위 법에 따른 수출 승인이나 신고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 리스크 및 관련 법령 위반 소지는 존재하지 않음.

## 4. 해외자회사 설립 등 직접투자신고 내역 등

- 현재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는 국내 법인인 '(주)브릿지건축사사무소' 및 관계회사 '(주)유비구조엔지니어링'뿐이며,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점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거나 수리를 받아

야 하는 해외직접투자 내역 및 이에 따른 법령 위반(미신고 등) 리스크는 해당 사항 없음.

## 5. 과거 3년간 해외매출채권 미회수 신고 내역

- 회사의 주요 매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국방부 등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 도급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 영업망을 통한 직접 수출 실적은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따라 당기말 기준 보유 중인 매출채권은 모두 국내 채권이며, 「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신고 대상인 '과거 3년간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해외매출채권 미회수 내역'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임.

## 6. 협회 가입 내역 등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회사의 협회 가입 내역은 아래와 같음.

순번	구분	명칭	비고
1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건설업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
3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업
4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5	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
6	협동조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직접생산확인 발급 목적
7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업체 자격,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8	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조달 관련 정보 파악
9	협회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정회원, 주업종 「플랜트 산업(건축용 모듈러 등)」
10	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Silver 특별회원사
11	연구조합	친환경소재신기술연구조합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공제조합 출자 및 협회 가입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해당 내역들은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① 법정 등록·면허의 유지, ② 매출 발생을 위한 자격 요건 충족, ③ 사업 실질 및 R&D 역량의 뒷받침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됨.
- 현재 모든 자격 및 출자 지분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법률적 리스크는 발견되지 않음.



### III. 유형자산

#### 1. 부동산

##### 가. 부동산 소유현황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 1) 토지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취득일	비고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비응도동 36-1	공장용지	102,476.90	2021. 12. 30.(매매) 2022. 5. 18.(소유권이전등기)	본점 및 제 1 공장
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석도동 857	공장용지	119,495.90	2025. 12. 9. (매매) 2026. 1. 19.(소유권이전등기)	군산 2 공장
3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69-3	공장용지	23,139.40	2025. 11. 27.(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025. 11. 27. (소유권이전등기)	김제공장

##### 2) 건물, 집합건물

순번	지번	구조	층수	용도	면적(㎡)	취득일
1	군산시 비응도동 36-1 (1 동)	일반철골구조	1 층	공장	20,388.41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2	군산시 비응도동 36-1 (2 동)	경량철골구조	1 층	창고	375.23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3	군산시 비응도동 36-1 (3 동)	경량철골구조	1 층	식당 및 샤워실	858.66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4	군산시 비응도동 36-1 (4 동)	경량철골구조	1 층	사무실	1,171.47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5	군산시 비응도동 36-1 (5 동)	일반철골구조	1 층	페인트 및 쇼트장	506.14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6	군산시 비응도동 36-1 (6 동)	일반철골구조	1 층	산처리장	53.39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7	군산시 비응도동 36-1 (7 동)	일반철골구조	1 층	컴프레셔 및 소방펌프실	202.64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8	군산시 비응도동 36-1 (8 동)	경량철골구조	1 층	폐기물보관장	287.79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9	군산시 비응도동 36-1 (9 동)	경량철골구조	1 층	위험물옥외저장소	46.44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10	군산시 비응도동 36-1 (10 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1 층	위험물옥내저장소	60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11	군산시 비응도동 36-1 (11 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1 층	경비실	38.31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12	군산시 비응도동 36-1 (12 동)	철근콘크리트조	1 층	알티룸	246.37	2021.12.30(매매) 2022.5. 18.(소유권이전등기)
13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69-3	일반철골구조	1 층(부속 3 층)	공장, 사무소 및 기숙사	13,207.37	2025.11.27.(임의경매로인한매각) 2025.11.27.(소유권이전등기)
14	군산시 오식도동 857	철골조	1 층	조립공장, 변전실 등	25,821.41	2025.12. 9.(매매) 2026. 1. 19.(소유권이전등기)

## 나. 임차부동산현황

- 회사는 현재 서울사무소(업무용) 및 사업 현장 숙소, 임직원 기숙사 용도로 총 46 건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음.
- 회사의 임차 부동산은 크게 업무용 시설, 현장 숙소, 공공임대 및 일반 기숙사로 구분됨.

구분	주요 소재지	건수	보증금 (원)	비고
업무용	서울 강남구 SH 타워	1 건	100,000,000	자회사 전대차 포함
현장숙소	안산 두산위브더센트럴	2 건	80,000,000	의왕초평 현장용
일반숙소	군산 더샵디오션, 푸르지오, 금호 등	11 건	103,500,000	소액 및 무보증 혼재
집단숙소	군산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일체	13 건	150,000,000	단지 내 다수 임차
공공임대	LH 군산 내흥동, LH 김제 백산마을	17 건	149,050,000	보증금 변동분 반영
기타	대치동 933-23 301 호	1 건	250,000,000	-
기타	일원동 629-19 번지 103 호	1 건	5,000,000	-
<b>합 계</b>		<b>46 건</b>	<b>837,550,000</b>	

### 1) 업무용 부동산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 SH 타워(11, 13 층)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140 만 원(관리비 별도)에 임차 중임. 2025. 8. 자 변경합의를 통해 2026. 10. 18.까지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자회사인 (주)브릿지건축사사무소에 일부 면적을 전대하고 있음.

### 2) 사업 현장 및 고액 숙소

- 의왕초평 현장 대응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역두산위브더센트럴' 2개 동을 임차(보증금 합계 8,000 만 원)하고 있으며, 군산 조촌동 더샵디오션시티(5,000 만 원) 등 고액 보증금 계약이 포함되어 있음.

### 3) 집단 및 공공임대 숙소

- 군산 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 단지 내 13 개 호실을 집중 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 중임.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군산 내흥동 및 김제 백산마을 일대의 공공임대주택 17 개 호실을 임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 ▶ 검토의견

### 1) 업무용 부동산 관련

- 서울사무소인 SH 타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회사는 보증금 1 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물은 업무용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고, 위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음. 따라서 회사가 서울사무소 소재지를 지점 또는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마친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 보호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
- 다만 자회사에 일부 면적을 전대하고 있으므로, 원 임대차계약상 전대차 허용 여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여부 및 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원 임대차기간 범위 내에 있는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LH 공공임대주택 관련

- 회사는 군산 내흥동 LH 내흥 3 단지 15 개 호실 및 김제 백산마을 2 개 호실 등 총 17 개 호실의 LH 공공 임대주택을 임차하고 있으며, 보증금 합계는 149,050,000 원임.
- 위 주택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인인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일반 민간 임대차에 비하여 임대인의 자력 부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 다만 LH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 실제 거주자, 전대 또는 사용승낙, 거주자 변경 통지·승인 등에 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거주 임직원 현황과 계약상 사용조건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 민간 임대주택 관련

-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 3 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 제 3 항).

- 회사가 제출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기재 내용에 비추어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바, 회사가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 3 자에 대한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 명문 규정이 존재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 조 이하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하여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대항력에 관한 위 제 3 조 제 3 항을 확대 해석하여 계약갱신요구권도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음(임대인 변심에 따른 퇴거 리스크 존재).
-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대항력에 관하여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그러나 현재 기준, 회사가 임차한 주택 중 적법하게 전입신고를 마친 숙소는 4 건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현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LH 공공임대 및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민간 주택(기숙사)' 중 보증금 규모가 큰 두산위브 등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직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진행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칠 것을 권고.

#### 다. 취득 예정인 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 등

- 회사가 제공한 정보상으로는 취득 예정인 토지 및 건축 중인 건물이 확인되지 않았음.

## 2. 토지, 건물 외 유형자산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회사의 나머지 유형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내역	비고
기계장치	용접기 등 28 건	국고보조금(휠로더 외 1 건)
차량운반구	지게차 (25D-9B) 1 건	
공구와 기구	완전전동파렛트 등 67 건	국고보조금(R&D_콘크리트 품질검사 장비 외 15 건)
비품	근로자 휴게 컨테이너 등 94 건	
시설장치	본사 식당 리모델링 공사 등 2 건	
임차자산개량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등 4 건	
사용권자산	리스거래조정 등	
임대용자산	모듈러 임대용 자산 등	

모듈러자산	모듈러 자산 일체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	국고보조금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정부 지원 R&D(연구개발) 사업을 활발히 수행 중이며, 이에 따라 취득한 기계장치 및 공구와 기구 등 총 19 건의 자산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반영되어 있음.
- 또한 회사의 핵심 사업인 모듈러 건축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제조업과 달리 '모듈러자산' 및 '임대용자산' 계정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3. 유형자산 증감내역

#### 가. 유형자산 증가내역

- 2025. 7. 1.~2025. 12. 31. 기준 유형자산 증가내역은 다음과 같음.

순번	자산 계정	당기 증가액(원)	주요 내역 및 사유
1	건설중인자산	24,140,293,000	신규 공장(제 3 공장 등) 건설 공사 등
2	모듈러자산	7,811,162,000	신규 모듈러 제작 취득
3	건물	2,752,706,000	오식도동 공장 건물 취득 등
4	기계장치	801,436,000	생산 기계 및 크레인 설비 등 신규 취득
5	공구와 기구	602,776,000	공장 내 가설재 및 공구 취득 등
6	비품	499,479,000	사무용 PC 및 근로자 휴게 컨테이너 등
7	사용권자산	449,575,000	신규 리스 자산 취득
8	시설장치	181,635,000	사업장 내 시설물 취득
	<b>합 계</b>	<b>37,239,062,000</b>	

#### 나. 유형자산 감소내역

- 회사의 2025 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 1. 1.~2025. 12. 31. 기준 총 164,120,000 원의 유형자산 처분(모듈러자산 약 1.6 억 원, 사용권자산 약 2 백만 원)이 발생하였음.

순번	자산 계정	처분 및 폐기(원)	감가상각비(원)	주요 내역 및 사유
1	모듈러자산	162,070,000	13,420,120,000	임대/판매용 자산 처분 및 상각
2	사용권자산	2,050,000	387,426,000	리스 만료 등에 따른 처분 및 상각
3	건물	-	398,408,000	결산 감가상각
4	기계장치	-	377,642,000	결산 감가상각
5	공구와 기구	-	317,849,000	결산 감가상각
6	비품	-	165,293,000	결산 감가상각
7	임차자산개량권	-	48,560,000	사무실 인테리어 등 상각

8	시설장치	-	21,901,000	결산 감가상각
9	차량운반구	-	4,344,000	지게차 등 상각
	<b>합 계</b>	<b>164,120,000</b>	<b>15,141,543,000</b>	

## IV. 부채 기타 채무

### 1. 차입금 및 담보 현황

#### 가. 차입금 현황

- 회사는 2025. 7. 28.자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제 7 기 사업보고서」(2025.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855 억 원(연결기준)에 달하며, 전환사채, 사모사채를 제외한 차입금 약정총액은 약 907 억 원임.

#### 나. 담보 현황

- 차입금의 주요 거래처는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시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이고, 그 담보로 군산·김제 양 공장의 토지·건물 및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인 모듈러 동산이 각 제공되어 있음.

#### ▶ 검토의견

- 회사의 차입금 및 담보 구조는 시설투자에 따른 통상적 자금조달의 결과로 보임.
- 자본시장법 제 161 조 제 1 항이 정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 36 종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순한 자금 차입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6 조 등이 정하는 의무공시 사항에도 단순한 은행 차입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차입거래에 관하여 정기보고서 외에 별도로 이행하여야 할 단일공시 의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위 의무를 「제 7 기 사업보고서」 차입금 명세란을 통하여 적정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담보제공의 경우, 회사의 채무를 위한 담보제공으로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의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단일공시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함.
- 회사의 현재 차입금 및 담보 구조는 자본시장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향후 신규 차입·담보제공·차환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자금부서와 공시담당부서 간 거래내역의 실시간 공유 체계 및 사모사채·전환사채 인수계약상 약정사항 점검 절차를 적절히 운영하여야 함.

### 2.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현황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회사의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합계는 10,176,784,287 원으로, 외상매입금 5,367,948,031 원, 일반거래처 미지급금 4,670,697,581 원 및 법인카드 미지급금 138,138,675 원으로 구성되어 있

음.

- 위 채무는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 및 관리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이며, 제공자료상 지급불능, 채무불이행, 거래처와의 분쟁 등 상장유지 관점에서 중대한 법률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V. 지식재산권

### 1. 지식재산권 현황 (보고서 작성일 기준)

#### 가.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 1) 등록된 특허 명세

- 한국 등록특허: 회사 명의 특허 총 13 건<sup>9</sup>
- 외국 등록특허: 회사 명의 특허 총 1 건 (미국)

##### 2) 출원 중인 특허 명세

- 한국 출원: 회사 명의 출원 총 2 건 (등록 진행 중)
- 외국 출원: 회사 명의 PCT 국제출원 총 3 건 (등록 진행 중)

#### 나. 상표권

- 한국 등록상표: 회사 명의 상표 총 7 건
- 외국 등록상표: 회사 명의 상표 총 1 건

#### 다. 디자인권

- 한국 등록디자인: 회사 명의 디자인 총 10 건

#### 라. 도메인

- 등록 도메인: 회사 홈페이지 총 1 건 (and-rb.com)

#### 마. 라이선스

##### 1) 회사가 제 3자로부터 부여받은 라이선스 내역

- 회사의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 없음.

---

<sup>9</sup> 회사 제공 자료에는 <기둥 일체형 건축모듈 및 이를 이용한 건축물의 시공방법>은 출원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KIPRIS)에 따르면 2025. 12. 4.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됨.

## 2) 회사가 제 3 자에게 부여한 라이선스 내역

- 회사의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 없음

### ▶ 검토의견

-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위 각 항 기재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사 결과로도 특별한 제한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회사가 제공한 정보 내역상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 중대한 법적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제공된 자료 및 대상회사 담당자에 의하면, 임직원이 재직 중에 개발하거나 창작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규정은 존재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지급 여부는 제공된 자료상 확인되지 아니함. 「발명진흥법」 제 15 조 제 2 항은 사용자에게 보상형태·보상액 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서면으로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대상회사는 위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구체적인 보상규정의 내용 및 이행 현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 대상회사 명의로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규모 및 보상 지급 내역에 따라 잠재적 채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 단계에서는 이를 중요한 법적 리스크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관련 규정의 추가 제출 및 확인을 통해 해소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됨.

## 2. 영업비밀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확인됨. 위 비밀유지서약서는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직무 관련 주요 정보를 보호하고,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외부 제공·누설·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퇴직 시 관련 자료 반환 및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 제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들과의 하도급계약 등 체결 시 별첨 양식의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NDA)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위 비밀유지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검토의견

- 위 비밀유지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영업비밀 보호 요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인한 분쟁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며, 그러한 분쟁 발생의 소지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법적 위험성은 확인되지 아니함.

### 3.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주식회사 플랜엠과의 사이에서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일련의 민사·형사 분쟁을 거쳐온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 분쟁은 종결된 상태임.
- 한편, 회사 명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KIPRIS 조회 결과상 위 분쟁과 관련된 디자인등록 무효심결 외에 별도의 권리관계 변동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함.

## VI. 계약

### 1. 주요 매출 계약 현황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매출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음.

순번	계약명
1	군위중학교 모듈러 교사동 및 기숙사 제작·설치 구매
2	거제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설치 및 임차용역
3	LH 의왕초평 A-4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도급계약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매출계약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체결한 군위중학교 모듈러 교사동 및 기숙사 제작·설치 구매계약,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 거제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실) 설치 및 임차용역 납품요구, ③ LH 의왕초평 A-4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련 도급계약 등으로 확인됨.

#### ▶ 검토의견

- 위 주요 매출계약들은 회사의 주된 사업인 모듈러 건축물 제작·설치·임대 및 모듈러 기반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계약으로서, 회사의 사업목적 및 영업범위에 부합함. 특히 군위중학교 및 거제초등학교 계약은 교육청 또는 조달청을 통하여 체결·진행되는 공공부문 계약이고, 의왕초평 계약 역시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거래상대방 및 사업 성격 측면에서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공된 계약서 및 납품요구서상 계약금액, 납품기한,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대금지급 등 주요 조건은 공공조달계약 또는 건설도급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의 조건으로 보이며, 현재 제공된 자료상 회사의 계약상 지위나 영업 계속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회사는 향후에도 납품기한, 검수, 하자보수, 기성금 및 대금 회수 등 계약 이행 현황을 통상적인 계약관리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기타 계약 현황

#### 가. 차량 리스 계약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임원진의 업무 수행, 영업 활동 및 현장(공장) 업무 지원을 위하여 총 19건의 법인차량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 중임.

- 운용 차량은 임원용, 영업용, 현장지원 및 화물용 등 목적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음.
- 전 차량 '주식회사 엔알비' 법인 명의의 36~60 개월 장기 렌트 및 리스(대부분 무보증금 조건).

▶ 검토의견

- 19 대 전 차량이 법인 명의로 정상 체결되어 있음.
- 승용차 전량에 대해 '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 경영진 및 임직원의 사적 유 용에 따른 배임 리스크나 법인세 비용 부인(세무 추정) 리스크 없음.
- 대부분 보증금/선수금 0 원(또는 보증보험 대체)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어 회사 현금흐름에 미치는 부담이 제한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우량 금융사와의 표준 약관 거래로 불합리한 위약금 등 우발채무 발생 소지 도 적을 것으로 판단됨.

나. 보증보험계약

- 회사가 제공한 SGI 서울보증 보험계약 유효현황조회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모듈러 교실·임시교사·공 공주택 건설공사 등 주요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보증보험, 선금보증보험, 하자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물 품대금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음.
- 위 보증보험은 주로 회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상 계약이행, 선금 반환, 하자보수, 하도급대금 지급, 보조금 반환 등 회사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제공자료상 회사가 특수관계 인 또는 제 3 자의 독립된 채무를 보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다. 제품 제조 위탁 등 관련계약서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의왕초평 A-4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신규 군산공장 생산설비 확충'과 관련하여 핵심 제조 위탁 및 설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위탁 계약에 선금금보증, 계약이행보증(10%), 하자보수보증(3~5%) 등 금융기관 보증보험이 완비되어 있 어 재무적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는 것으로 평가됨.
- 법정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고 있으며 전용 비밀유지계약서(NDA)를 통해 양사 간 분쟁 소지를 차단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VII. 인사 · 노무

### 1. 개요

#### 가. 조직 및 인원현황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군산산단로 96 (비응도동)을 본사로 하고 있음.
- 회사가 제공한 조직도에 의하면, 2026. 4. 15. 기준 회사의 조직은 대표이사 산하 (i) R&D 본부, (ii) 설계본부, (iii) OSC 사업본부, (iv) 사업관리본부 등 4 개 본부 및 그 산하 9 실, 1 현장(의왕초평 A-4 블록), 1 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상 R&D 본부 산하 또는 관계사로 표기된 '(주)브릿지건축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
- 회사는 2026. 4. 15. 기준 총 141 명의 임직원이 있음(회사 제공 요약표 기재 기준).
- 회사가 제공한 기간제근로자 명단 및 근속기간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을 계약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외 일부 직원에 대하여도 계약유형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공된 부서별 인원현황 요약본 상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확한 구분 및 명수는 확인되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 20 명을 별도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나. 도급 및 파견 인력 관련

- 회사는 외부인력으로 경비 2 명 및 청소인력 1 명을 사용하고 있음.
- 회사는 유한회사 군장공사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공장에 경비원 2 명을 배치받아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음.
- 위 경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군장공사는 경비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책임,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경비원 임면에 대한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경비원의 근태, 비위 사실 등에 관한 통제 및 교체, 징계 절차 역시 군장공사가 처리하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음.
- 회사가 제공한 자료상 청소인력 1 명과 관련한 청소용역계약서 또는 해당 청소업체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여부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회사는 부품 생산 공정과 관련하여 외부 가공업체에 일부 업무를 외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회사의 설명으

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 검토의견

- 경비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군장공사가 경비원의 채용, 근태관리, 징계, 근로조건 및 산업재해 관련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는 경비업무를 용역 형태로 제공받는 구조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문언상으로는 도급 또는 용역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 다만, 용역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운영상 회사가 경비원, 청소인력 또는 외주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업무지시, 근태관리, 인사상 평가·징계 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특히 경비·청소와 같이 회사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의 경우, 실제 지휘·감독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므로, 회사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시를 최소화하고, 업무 요청은 원칙적으로 용역업체 관리자 또는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공자료상 외부인력 사용과 관련하여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소인력 1 명에 관한 계약서 및 외부 가공업체와의 계약·운영 실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은 향후 계약서 및 실제 운영방식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 다. 기간제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도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기간제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항).
- 회사가 제공한 기간제근로자 명단 및 근속기간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직 인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에는 각 인원의 임원 여부, 계약유형, 입사일자, 재직기간 및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음.
- 위 자료상 계약직으로 분류된 인원에는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임원을 제외하고 직원으로 분류된 계약직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 제공자료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확인되지 않음.

- 특히 직원 계약직으로 기재된 인원들은 대부분 2025년 9월 이후 또는 2026년에 입사한 자들로서, 자료상 재직기간은 현재기준 8개월 미만인 것으로 확인됨.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기간제근로자 명단 및 근속기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직원 계약직 중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원은 확인되지 않음.
- 다만 계약직으로 분류된 인원 중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간제법 적용대상인 기간제근로자와 임원 계약직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향후 직원 계약직을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거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공자료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상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다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중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됨.
- 민간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5년 및 2026년 기준 3.1%임.
-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됨.
- 한편 회사가 제공한 인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6. 4. 15. 기준 회사의 임직원 수는 총 141명으로 확인되므로, 2026년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대상 사업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검토의견

- 회사는 2025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였으므로, 2025년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미납 또는 체납 이슈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2026년 기준 회사의 임직원 수가 141명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회사는 2026년부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회사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2026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하여 2027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는 2026년 이후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및 부담금 발생 가능성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근로조건 관련 규정

### 가. 취업규칙

- 회사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음.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2023. 6. 8. 제정·시행되고 2023. 6. 27. 일부 개정된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음.
-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 설명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 사무실·휴게실·그룹웨어 등에 취업규칙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검토의견

-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퇴직·해고, 퇴직급여, 징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전보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기본적 체계는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회사의 현재 취업규칙은 2023년 제정·개정된 이후 2025년부터 시행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관련 개정 법령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현행 취업규칙상 육아 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 일수 등에 관한 조항은 최신 법령 기준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 수습기간의 일방적 연장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항, 포괄임금제 적

용 조항, 신규 입사자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연장 조항 등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및 실제 임금·근태 운영 방식과 함께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로기준법 제 97 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법령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령상 기준이 직접 적용되므로, 회사는 노동청 점검 및 향후 노무 분쟁 예방 차원에서 취업규칙을 최신 노동관계법령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제공자료상 취업규칙의 미정비만으로 회사의 상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법령 위반 또는 제재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음.

## 나. 근로계약서

### 1) 근로계약 전반

- 회사가 제공한 근로계약서 양식은 수습용 및 본채용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소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준수 의무, 계약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임금의 세부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지급방법 등은 별도 연봉계약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회사가 제공한 연봉계약서 샘플에 따르면, 회사는 월 지급총액, 연봉총액,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양식은 근로기준법 제 17 조상 근로조건 서면명시의 기본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관련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 53 조와의 호응을 위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 수습용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수습기간 연장 관련 조항 일방적 연장 취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 현재 제공자료상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 양식 자체가 회사의 상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 2) 포괄임금제

- 회사의 취업규칙은 일정한 경우 직원의 동의하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

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회사가 제공한 연봉계약서 샘플에 따르면, 월 지급총액은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개별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외근무 시간이 기재되어 직원들에게 제공되고 있음.

#### ▶ 검토의견

- 회사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개별 급여명세서에 시간외근무 시간을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임금항목 및 시간외근로 관리 체계는 일정 부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연장근로수당 약정이 적용되는 경우, 향후 근로조건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상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산정시간, 수당액 및 실제 법정수당이 약정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의 정산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제공자료상 위 임금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임금체불, 퇴직금 산정 오류 또는 노무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 3)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됨.
- 회사의 취업규칙은 임금을 기본급, 법정수당, 기타 수당 등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음.
- 회사가 제공한 연봉계약서 샘플에 따르면, 회사는 월 지급총액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으며, 연봉은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정기상여금은 매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
- 한편 회사는 2026. 1.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임금의 구성,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임금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됨.

#### ▶ 검토의견

- 회사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주요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6. 1. 개정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 구성 및 수당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한 것으로 보임.
-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각 임금항목의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금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따라서 정기상여금, 직책수당, 식대, 기타 고정수당 등이 전 직원 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회사가 2026.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 및 임금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한 점을 고려하면, 통상임금 산정기준의 명확성은 종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도 회사는 연봉계약서, 급여대장, 상여금 지급기준 및 취업규칙상 임금규정 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공자료상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추가 법정수당 청구 또는 노무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 4) 퇴직금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고, 직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각각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산정 및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내부 규정 체계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 수는 10 명, 적립금은 101,337,171 원, 최종 적립비율은 33.70%로 기재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회사는 2023. 1. 최초 퇴직연금 불입 당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기준으로 가입자 명단을 구성하였고, 이후 추가불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입사자 등은 퇴직연금 가입자 명단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 단, 회사는 2026 년 중 추가납입 및 가입대상자 명단 정비를 예정하고 있음.
-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속 만 1년 이상인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 기초임금 산정방식, 14일 이내 지급 원칙 등을 정하고 있어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내부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임시직원, 축탁, 일용근로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에 대하여 평균급여와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급률은 재임 매 1 년에 대하여 월 급여액 1 개월분으로 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특별히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음.
- 현재 제공자료상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회사의 상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법령 위반, 미지급 사례 또는 노무분쟁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회사가 설명한 바와 같이 2026 년 중 퇴직연금 추가납입 및 가입대상자 명단 정비를 완료하고, 향후 임직원 변동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 및 적립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 5) 전직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약정

- 회사가 제공한 경업금지약정서 샘플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후 2 년간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위 약정서는 보호대상 영업비밀로 “근무 중 취득한 모듈러 제작에 관한 설계도서 및 제작기술”을 예시하고 있음.

### ▶ 검토의견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금지기간, 금지지역, 대상업무, 보호할 영업비밀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회사의 경업금지약정서는 금지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보호대상 기술을 일정 부분 특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형식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금지대상 기업 또는 업무 범위가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실제 영업비밀 접근 가능성이 있는 직무 또는 핵심인력 중심으로 체결·운영하고, 금지대상 업무와 보호대상 영업비밀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제공자료상 위 약정과 관련하여 임직원과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 6) 기타 계약 등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외에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비밀유지서약서에는 재직 중 및 퇴직 후 회사의 영업비밀,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모듈러 제작 관련 설계도서 및 제작기술, 회사의 취업규칙·영업비밀 관리규정·사규·방침·정책 등을 준수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서에는 법과 윤리의 준수, 고객·주주·종업원·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 존중, 투명한 경영활동,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원칙이 기재되어 있음.
- 회사가 제공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비밀을 내·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회사가 제공한 임원계약서에는 임원의 업무수행, 보수체계, 퇴직금, 비밀유지, 부정경쟁 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 검토의견

- 회사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임원계약서 등 인사·노무 및 내부통제 관련 기본 계약서·서약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비밀유지서약서 및 준법·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체계 구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비밀유지서약서와 경업금지약정서에 유사한 경업금지 취지의 문구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각 문서의 목적과 효력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비밀유지서약서는 영업비밀 및 비밀정보 보호 중심으로, 경업금지약정서는 제한대상 직무·기간·업종·지역을 명확히 한 예외적 약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원계약서의 경우 비밀유지, 경업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등 회사 보호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경업금지 기간 및 제한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업비밀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문구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등급분류, 접근 권한 관리, 자료 반출 통제, 퇴사자 자료반납 확인, 전산 접근권한 회수 등 실제 관리체계가 함께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제공자료상 기타 계약 및 서약서와 관련하여 회사의 상장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법률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경업금지 관련 문구와 영업비밀 관리체계는 향후 분쟁 예방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산업재해 및 사회보험

-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는 없음.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른바 4대보험 가입의무를 부담함. 이와 같은 4대 보험 가입의무의 불이행은 아래와 같이 과태료 등의 제재 대상임.
-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해당.
-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25. 12. 31. 현재 가입된 4대보험과 관련된 체납액은 없음.

### 4. 산업안전보건관리

- 회사의 군산 사업장은 회사가 제출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상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이 “기타금속가공제조업, 모듈러”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수는 총 100명으로 기재되어 있음.
- 회사의 주요 사업은 모듈러 건축물의 제조 및 시공이고, 군산 사업장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됨.
- 회사는 2026. 4. 20. 표범주 및 김영균을 각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2026. 4. 22. 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표범주는 산업안전 관련 학과 졸업자, 김영균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자로 기재되어 있음.

- 회사의 2025년 안전·보건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이후 안전·보건관리 조직으로 안전보건관리부 및 안전보건관리팀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관리자는 “위탁(현재)”으로 기재되어 있음(회사 확인 결과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에 위탁)
- 보건분야 예산 항목에서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본사, 국내외 현장 및 사무소의 모든 임직원과 근로자, 협력업체 임직원 및 근로자, 사업장 내 출입자 및 외부 방문객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정기회의는 90일 내로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음.
- 회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매뉴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체계 및 위험성평가 실시자료 등을 마련하고 있음. 회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에는 안전보건을 경영의 사결정의 기본 요소로 삼고,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공장 및 시공현장을 포함한 전 사원 및 모든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검토의견**

- 회사는 군산 사업장에 관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였고, 보건관리자는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이에 비추어 회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련 법정 관리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업보건의 선임 관련 사항도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매뉴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체계, 위험성평가 실시자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 내부 문서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제출자료상 회사는 위험성평가 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지게차 안전교육,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TBM 활동지도 등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 및 회사의 설명상 회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상장법인으로서 특별히 유의할 만한 중대한 법률상 이슈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회사는 모듈러 건축물의 제조 및 시공을 수행하는 사업 특성상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재 마련된 안전보건관

리체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교육의 이행내역을 지속적으로 문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5. 최근 직원 퇴사 현황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퇴사자 명단에 의하면, 2023. 1. 1.부터 2026. 4. 24.까지 퇴사 또는 퇴직정산 처리된 임직원은 총 50 명임. 그 중 의원면직으로 기재된 인원은 47 명이고, 임원 승진에 따른 중간정산으로 기재된 인원은 3 명이며,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자로 명시된 인원은 확인되지 않음.
- 해당 기간 동안 회사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거나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정은 제공자료상 확인되지 않음.
- 또한 제공자료상 퇴사자들의 미사용연차는 모두 “정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 다만,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기타 임금 등의 미지급 채무가 없다는 점은 회사의 확인을 전제로 함.

### ▶ 검토의견

- 최근 3년간 퇴사자 대부분은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었고, 해고·권고사직·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자로 명시된 인원은 확인되지 않음. 또한 퇴사자의 미사용연차는 모두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지급 내역이 확인됨.
- 아울러 회사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제공된 소송현황 자료상 퇴직금 미지급 또는 퇴직정산과 관련한 소송·분쟁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제공자료 및 회사의 설명을 전제로 할 때,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 퇴직정산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률상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6.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바 없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르면 30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동 협의회는 3 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제 12 조).

▶ 검토의견

-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교섭 의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집단적 노사분쟁(파업, 태업 등)에 의한 조업 중단 리스크는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음. 경영권 행사 및 인사 노무 관리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보되어 있음.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되어 협의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상황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밖의 특별한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조건 협의 시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적법하게 신고된 노사협의회 규정이 있는지, 정기회의록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를 후속 점검 필요(미비치 시 과태료 대상).

## 7.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사업 영역은 모듈러 건축물 제조 및 현장 시공업이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141 인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임.

### 가. 중대산업재해

####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법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 4 조).

<b>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b> (시행령 제4조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b>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b> (시행령 제4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② 토목건축 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함.
<b>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점검</b>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

<b>(시행령 제4조 제3호)</b>	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위 점검을 한 것으로 봄.
<b>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b>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b>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보강 (시행령 제4조 제5호)</b>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각 사업장에서 법정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함.
<b>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b>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b>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조치 (시행령 제4조 제7호)</b>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안전·보건 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봄.
<b>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절차 마련 및 점검 (시행령 제4조 제8호)</b>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b>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 마련·점검 (시행령 제4조 제9호)</b>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 검토의견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 4 조 제 1 호):

- 회사는 2026. 1. 2.자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여, ① 안전보건을 경영의사결정의 기본 요소로 삼고 ② 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③ 국내외 안전보건 법규를 준수하고 ④ 공장 및 시공현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마련함.
-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는 종사자 전원이 공유·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회사 전체, 공장별, 사업부서별, 현장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전담조직(시행령 제 4 조 제 2 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일정 순위 이상의 건설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을 요구함.
- 제출자료상 회사의 군산 사업장 근로자 수는 10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 신고한 안전관리자는 표범주, 김영군 2명임.
- 회사가 작성한 안전보건 업무 추진계획 자료상 회사는 2025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 기준 도급순위 439위이며,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를 전제하고 있음.
- 제출된 자료만으로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 조 제 2 호상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회사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회사가 기술지원실 산하 안전보건그룹을 두어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체계, 안전보건 업무 추진계획 등을 마련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관련하여 중대한 미비점은 확인되지 않음.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및 조치(시행령 제 4 조 제 3 호)

- 회사는 위험성평가 실시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체계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및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또한 2026년 5월 비상훈련 실시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회사는 군산공장 직원 및 수급사 직원을 대상으로 공장 내 화재 시 대피방법, 비상연락망, 분말소화기 사용방법, 옥외소화전 사용방법 등에 관한 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외국인 의사소통, 실제 상황 준비, 생산라인 비상알림 준비 등에 관한 개선사항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회사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일정 수준 마련·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4) 예산 편성 및 집행(시행령 제 4 조 제 4 호):**

- 시행령 제 4 조 제 4 호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2026 년 안전보건 업무 추진계획에는 안전보건예산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주요 안전·보건 비용 계획으로 군산공장 안전교육장 조성, 전 직원 외부기관 안전보건교육 이수 지원 등이 기재되어 있음.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조치(시행령 제 4 조 제 5 호)**

-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지원실 안전보건그룹을 주관부서로 하여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6. 4. 20. 표범주 및 김영군을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이를 2026. 4. 2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보고함.
- 따라서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시행령 제 4 조 제 5 호는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 회 이상 평가 실시를 요구하는데,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31 조에 따르면,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권한·예산 부여 여부 및 업무수행 충실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보건주관부서가 전 프로젝트에 대해 안전보건 Audit 을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활동 수준평가를 반기 1 회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량화하여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시행령 제 4 조 제 5 호상 평가기준 및 반기 1 회 이상 평가 절차를 규정상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시행령 제 4 조 제 6 호)**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군산 사업장에 관하여 근로자 수 총 100 명을 기준으로 표범주 및 김영군을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함.

- 표범주는 산업안전 관련 학과 졸업자, 김영군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자로 기재되어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제출자료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는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과 보건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는 제출자료 및 회사의 설명상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을 통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임.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점검 조치(시행령 제 4 조 제 7 호):**

-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체계에는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및 점검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2026 년 비상훈련 실시보고서에는 훈련 결과 문제점 및 개선계획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보건활동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도출·관리하고 있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등 공식 협의체의 개최내역, 근로자 및 수급업체 종사자 의견 수렴 내역, 개선의견 처리결과, 반기별 이행점검 자료는 현재 제공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음.

**(8)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시행령 제 4 조 제 8 호)**

- 회사는 위기관리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매뉴얼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및 그 밖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대응 및 훈련, 보고, 사고처리, 재발방지 이행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회사는 2026 년 5 월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화재 시 대피방법, 비상연락망, 소화기 및 옥외소화전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회사는 급박한 위험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매뉴얼 및 훈련 체계를 일정 수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시행령 제 4 조 제 9 호):**

- 회사의 사업 특성상 모듈러 건축물의 제조, 운반, 현장 조립·설치, 해체, 유지관리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수급업체와의 도급·용역·위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안전보건경영방침에도 공장 및 시공현장을 포함한 전 사원 및 모든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가 포함되어 있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체계에도 협력사 및 수급업체 관련 안전보건관리 절차가 포함되어 있

음.

- 다만 현재 제공자료만으로는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 적정 공사기간 및 비용 보장 기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점검표, 평가결과 및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조치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회사에 발생한 산업재해가 없었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 3) 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행조치(제 4 조 제 3 호)

-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회사에 발생한 산업재해가 없었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 4 조 4 호)

- 안전보건 관련 내부 규정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비상훈련 실시 등 주요 안전보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여부,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 여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여부, 반기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결과는 현재 제출자료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상장유지 관점에서 중대한 안전·보건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나. 중대시민재해

### 1) 원료·제조물 (중대재해처벌법 제 9 조 제 1 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 9 조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회사는 모듈러 건축물을 개발·기획·설계하고, 공장 제작부터 현장 조립·설치 및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

을 수행하는 회사임.

- 회사가 생산·제조하는 모듈러 유닛, PC 부재, 기타 건축 구성 부재는 그 자체로 완성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완성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일반 시민에게 생명·신체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검토의견**

- 회사는 모듈러 건축물 및 그 구성 부재를 설계·제조하고, 이를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생산·제조하는 모듈러 유닛, PC 부재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제 9 조 제 1 항의 “제조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회사의 제조물은 공동주택, 학교, 기숙사, 군시설, 공공시설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설계·제조·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완성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일반 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자료, 위기관리 및 대응 매뉴얼 등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제공자료만으로는 제조물의 설계·제조·출하·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제품 안전성 검토, 품질관리 기준, 구조안전성 검토, 결함·하자 관리내역,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 절차가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점에서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지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출하, 운반, 시공, 유지관리 단계별 안전성 검토자료, 품질관리 기준, 하자 및 결함 대응 절차, 사고 발생 시 보고·조사·재발방지 절차를 문서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 및 회사의 설명상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실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재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법 제 9 조 제 2 항 및 제 3 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 9 조 제 2 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 3 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 3 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제 3 자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검토에서는 ① 회사가 직접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 또는 교통수단이 있는지, ② 해당 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 3 자에게 도급·용역·위탁한 업무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별표 2, 별표 3 및 시행령 제 3 조 각 호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는 시행령 제 10 조 및 제 11 조에서 정하고 있음.

### ▶ 검토의견

- 현재 제공된 자료상 회사가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사업장은 모듈러 건축물 제조·시공 관련 공장, 사무소 및 현장으로 파악되며, 제출자료상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 다만 군산 사업장은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서 연면적 24,235 m<sup>2</sup> 규모의 건축물로 확인되므로, 해당 시설이 시설물안전법상 제 1 종·제 2 종·제 3 종 시설물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분류자료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 및 회사의 설명상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실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재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VIII. 소송 및 분쟁

### 1. 제재 현황

#### ▶ 검토의견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5. 7. 1.부터 2026. 3. 31.까지 새롭게 추가된 제재 처분이나 그 밖의 변동사항은 없음.

### 2. 소송 현황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에 의하면, 2025. 7. 1.부터 2025. 12. 31.에 이르기까지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송, 중재 및 기타 쟁송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 검토의견

- 과거 소송 이력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거 '주식회사 플랜' 등과 얽혀 있던 다수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지적재산권(디자인 무효), 형사 고소·고발 등 복잡한 분쟁들이 2024 년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법원 상고기각 및 검찰 불기소(항고 기각) 처분 등을 통해 회사의 방어가 성공하며 모두 종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회사의 핵심 사업(모듈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IP 및 영업비밀 관련 중대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었다고 평가됨.

### 3. 기타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별도의 제재는 없음.

## IX. 보험

### 1. 보험가입 현황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현재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 화재종합보험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으며, 각 보험계약은 현재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① 생산물배상책임보험, ② 군산 제 2 공장 관련 화재종합보험, ③ 김제공장 관련 화재보험, ④ 모듈러 담보 관련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음.
- 제공자료상 회사의 주요 보험은 회사의 사업장, 모듈러 건축물 및 생산물 관련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등에 비추어 현재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유지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음.
- 한편 회사는 위 보험 외에도 선금, 하자, 대금보증, 외국인, 자동차 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제공한 보험가입 현황표에서는 해당 항목들이 별도 목록에서 생략된 것으로 확인됨.
- 회사의 사업 내용 및 제공자료를 전제로 할 때, 현재 검토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법률상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미가입한 보험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공사, 전기공사, 소방설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개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공제, 보증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각 프로젝트별 계약 조건 및 인허가 요건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함.

### 2. 보험사고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자료 및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5 년간 주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 기타 제 3 자와 사이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현재 제공자료 기준으로는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사의 영업, 재무상태 또는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X. 공정거래

### 1.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 현황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회사의 단체 가입 내역은 아래와 같음.

순번	구분	명칭	비고
1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건설업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
3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업
4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시설공사업
5	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
6	협동조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직접생산확인 발급 목적
7	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업체 자격,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8	협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조달 관련 정보 파악
9	협회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정회원, 주업종 「플랜트 산업(건축용 모듈러 등)」
10	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Silver 특별회원사
11	연구조합	친환경소재신기술연구조합	

#### ▶ 검토의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 2 조 제 2 호는 사업자단체를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정의함.
- 이에 따르면 회사가 가입한 단체 중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 사단법인 군산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동종 사업자들이 구성되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친환경소재신기술연구조합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보증·공제·연구개발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이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는 그 구성원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정거래법 제 51 조 제 1 항은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 40 조 제 1 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교사·방조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게도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특히 동종 사업자들이 회합하는 단체에서 공공조달 입찰가격, 원자재 가격, 거래처 분배 등에 관한 정보가 교환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 40 조 제 1 항 제 1 호(가격결정) 또는 제 8 호(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음.
- 현재까지 회사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가 영위하는 건축용 모듈러 사업의 공공조달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 회의 참석 시 경쟁민감정보 논의

를 차단하는 내부 준수지침의 마련이 권고됨.

## 2. 공정거래 관련 제재 또는 분쟁 내역

### ▶ 검토의견

- 실사 대상 기간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타 감독기관으로부터 부당 단가 인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이력은 발견되지 않음.
- 당사는 모듈러 건축업의 산업 특성상 공장 내 자재 납품, 임가공 및 현장 조립·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도급 및 하도급 거래 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신규 공장 증설(건설중인자산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외주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상장회사로서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향후 잠재적인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정례화하고, 법정 대금 지급 기일을 준수하는 등 내부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통제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유지할 것을 권고.

# XI. 환경 및 안전

## 1. 환경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자료 및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G.1.4).
- 회사는 모듈러 건축물의 제작·조립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회사의 설명상 현재 운영 중인 공정에서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폐수,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령상 허가·신고 대상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인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회사가 향후 생산설비를 증설하거나 콘크리트 제조, 절단·연마, 도장, 세척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정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 안전

### 가. 소방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사의 군산 사업장은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강성배가 2022. 11.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됨.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는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화기 취급 감독 등이 포함됨.
- 또한 회사의 소방안전관리자인 강성배는 2024. 10. 29.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6 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됨.
- 회사는 2026 년 5 월 군산공장 직원 및 수급사 직원을 대상으로 공장 내 화재 시 대피방법, 비상연락망, 분말소화기 사용방법, 옥외소화전 사용방법 등에 관한 비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 ▶ 검토의견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공장 내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나.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발생 현황

- 회사가 제공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25 년(1 년 평균)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사업장(모듈러 공장) 산재 발생 지표는 동종 업계 평균 대비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됨.
- 2025 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 및 질병 재해율이 '0.00'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된 치명적인 우발 리스크나 행정 제재 이력은 발견되지 않음.
- 모듈러 공법의 안전성 입증: 전체 재해율(0.09%)이 업계 평균(1.79%)을 압도적으로 하회하는 것은 의미가 큼. 이는 회사가 공장 내 '사전 제작(Prec-fab)' 비율을 극대화하여 추락, 붕괴 등 위험한 현장 건설 노동을 최소화하는 모듈러 공법 본질의 안전성 우위를 실제 데이터로 입증한 긍정적 지표로 평가됨.

## 다.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회사는 2025 년 안전보건활동으로 안전관계자 외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교육 대상에는 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회사의 2026 년 안전보건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회사는 2026 년 주요 안전·보건 비용 계획에 군산 공장 안전교육장 조성 및 전 직원 외부기관 안전보건교육 이수 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의 개별 이수증 또는 교육이수 내역 전부가 확인되지는 않음.

### ▶ 검토의견

- 회사는 안전관계자 외부 안전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현장·공장별 안전보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사회에서 보고된 안전관리업무 추진계획(실행전략)에 따르면 2026 년에도 외부기관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의 개별 이수 여부는 제출자료상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제공자료상 상장유지 관점에서 중대한 법률상 리스크는 확인되지 않음.

## 라. 안전환경 인증 현황

### ▶ 검토의견

- 회사의 사업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회사가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 9001:2015)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및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국가표준기본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임의적 인증제도로서, 해당 인증의 미취득이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업 수행에 법률상 직접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는 인증 취득 여부와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고, ②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 요건 또는 주요 거래처·수출 계약 조건으로 해당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 3. 환경·안전 관련 사고 발생 여부

-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 추가로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는 없음.
- 2025. 7. 1.부터 2025. 12. 31.까지 회사의 환경, 안전, 보건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환경상 책임과 관련하여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행정절차, 정부의 공문, 인근 주민의 민원, 과징금, 부담금, 벌금 등의 부과 또는 납부 사실이 없음.

## XII. 조세

### 1.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내역

-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회사의 법인세 납부액은 2025 년 3,732,225,480 원임(연결 기준).
- 회사는 2025. 6.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음.
- 회사가 제공한 국세 납세증명서(2026. 5. 4. 발급)에 따르면 현재 회사의 국세 체납액은 없음.
- 회사가 제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2026. 5. 4. 발급)에 따르면, 현재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은 없음.

#### ▶ 검토의견

- 위와 같은 법인세 납부 내역 및 모범납세자 선정 사실에 비추어, 회사가 체납한 국세 또는 지방세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 납부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률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2. 세액공제 내역

- 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음.

순번	내용	관련규정	대상세액(원)	공제세액(원)
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 조 제 1 항 제 3 호	272,463,495	272,463,495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7	90,830,000	90,830,000
3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29 조의 8	514,840,000	514,840,000
4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1 조 제 16 항	1,232,294,844	1,176,989,647
	<b>합계</b>		<b>2,110,428,339</b>	<b>2,055,123,142</b>

- 회사의 2025 년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회사는 202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15,022,163,726 원, 산출세액 2,834,211,107 원을 신고하였고, 공제·감면세액 반영 후 총 부담세액은 779,087,965 원으로 산정됨. 또한 기납부세액 1,137,781,320 원이 반영되어 차감납부할 세액은 -358,693,355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회사의 2025 년 세무조정계산서상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에 의하면, 회사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72,463,495 원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됨.
-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 의하면, 회사는 2025 사업연도에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 1,232,294,844 원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514,840,000 원을 당기 공제대상세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임시통합투자세액공제 중

55,305,197 원만 당기 공제세액으로 반영되고, 1,176,989,647 원은 최저한세 적용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에 의하면, 회사는 2025 사업연도에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하여 인건비 980,005,703 원 및 위탁·공동연구개발비 109,848,279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과제총괄표상 연구과제는 “PC 모듈 리구조개발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하면, 회사는 2025 사업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을 1,232,294,844 원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됨.

#### ▶ 검토의견

- 법률실사의 범위상 세액공제의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 공제대상 비용의 적정성, 투자자산별 공제율 적용의 정확성 및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이월공제 산정의 적정성까지 독자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며, 세무상 리스크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를 통하여 법인세 신고서, 세액공제·감면 명세서, 연구개발비 발생명세, 투자자산명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회사가 적용받은 조세감면 또는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명백한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법률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음.

### 3. 세무조사 및 세무 관련 분쟁

- 회사가 제공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군산시는 회사에 대하여 2024. 10. 28.부터 2024. 11. 14.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대상세목은 취득세 등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인됨.
- 위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라 일부 신고 누락 항목과 관련하여 지방세 과세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후 발급된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따르면 현재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회사가 제공한 자료상 위 지방세 세무조사 외에 현재 진행 중인 조세불복, 세무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은 확인되지 않음.

#### ▶ 검토의견

- 회사는 2024 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결과 확인된 사항은 가설건축물 취득신고 누락 등에 따른 취득세 등 소액의 지방세 과세예고로 보이며, 현재 제공된 자료상 중대한 조세 관련 제재나 분

쟁으로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최신 지방세 납세증명서상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위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액은 납부 또는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가 제공한 자료상 현재 진행 중인 조세불복, 세무 관련 소송 또는 분쟁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및 세무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회사의 상장 유지 또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문제 될 만한 중대한 법률상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임.

### XIII. 종합의견

- 회사 일반 및 주식

-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인·허가

-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유형자산

- 특별히 중대한 문제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임직원 숙소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 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채 기타 채무

- 회사의 차입금 및 담보 구조는 신규 시설투자에 따른 통상적 자금조달의 결과로 보이며, 사모사채·전환사채 인수계약상의 약정사항도 정책자금 P-CBO 거래 및 벤처투자 거래에서 통상 부과되는 표준적 약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회사는 자금부서를 통하여 위 약정사항 및 차입조건을 적정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식재산권

-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계약

-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인사·노무

- 향후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 일정에 따라 개정 법령 내용을 반영함이 바람직함.

- 회사는 2026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 대상에 해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준비 및 검토를 권고.

▪ **소송 및 분쟁**

-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보험**

-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공정거래**

-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환경 및 안전**

-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조세**

- 회사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고 2026. 5. 4차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재에 따르면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 납부 및 세무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법무법인 영민

